

연구보고 20-R18

#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이정민

공동연구원 이종원

NYPI



---

연구보고 20-R18

---

#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책임연구원\_ 이정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_ 이종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연구보조원\_ 허효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사업운영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 조성으로 인한 학교 내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을 위한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을 제기하기 위해 현 학교 내 인권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실제 학교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학생 인권교육 실천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 인권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한 학교 인권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또, 인권교육에 관한 생활 철학적인 접근을 통한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성을 인권적 태도 기르기, 자율성의 경험(만족), 그리고 동등성의 경험 등으로 서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보호자)와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육청이 인권교육을 위해 지향해야 할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권교육의 특징에 대하여 현장 교사의 경험을 토대로 논하였다. 이와 같은 인권교육의 학교 현장 실천 프로그램을 위한 교육내용의 구성, 교수 학습 방법, 인권교육의 학교 현장 실습 프로그램 운영방향을 설계하고, 이를 적용한 실습유형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학교 현장 실천 프로그램의 실천방법 또한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성이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인권교육의 모니터링 등의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과 학생 인권교육에 관한 법제화 노력, 그리고, 학생 인권교육 전담기구 설립 등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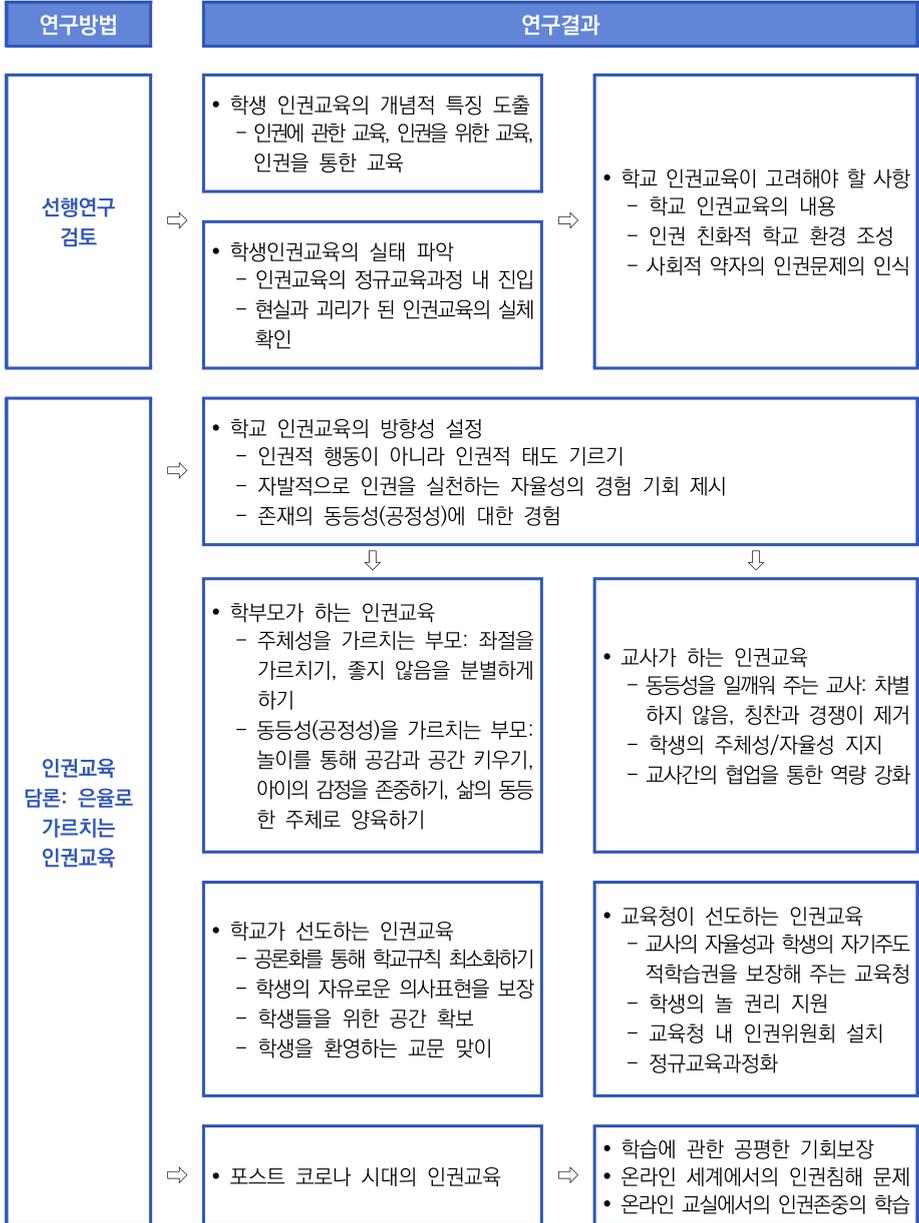
###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 대두와 함께 정규교육과정 중에 인권교육의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실천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의 실천이 단순 지식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학교현장 실습을 위한 표준 프로그램 설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이와 같은 인권교육의 실천을 통한 친인권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통한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의 핵심적 의미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학교 현장 실천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방법과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및 인권교육 실천사례 분석을 시작으로 하여 인권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철학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안을 도출함.
- 도출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안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8인과 내용 연구 전문가 2인에게서 내용 타당도를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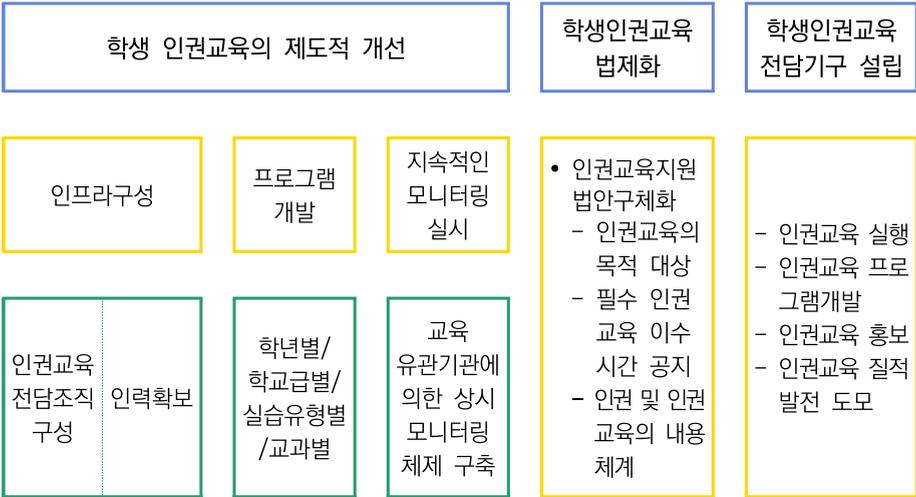
### 3. 연구결과



연구방법	연구결과	
<p>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천 프로그램 설계의 틀</p>	<p>⇒ • 인권교육의 내용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존중의 가치/태도 형성</li> <li>-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li> <li>-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이해</li> <li>-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li> <li>- 인권 친화적 현실참여</li> </ul>
	<p>⇒ • 교수학습 방법 설계 가이드라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기반(Task-centered)</li> <li>- 활성화(Activation)</li> <li>- 시연(Demonstration)</li> <li>- 적용(Application)</li> <li>- 통합(Integration)</li> </ul>
	<p>⇒ •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운영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의 내용의 체계적 구성</li> <li>- 교사의 역량 함양</li> <li>- 학생의 실천적, 경험적 학습</li> <li>- 학교 및 유관 기관의 지원</li> <li>- 외부 인권교육 전문가와의 연대</li> <li>- 학생 보호자의 협력</li> </ul>
<p>학생 인권교육 현장실습 유형별 프로그램 설계</p>	<p>⇒ • 학교 내 인권교육(교내 활동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목 연계 실습</li> <li>- 교실 내 생활 속 실습</li> <li>- 전문가사가 진행하는 영역별 특성화된 실습</li> <li>-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실습</li> <li>-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실습</li> </ul>
	<p>⇒ • 연계 교육형(교내 + 교외 활동형)</p>	
	<p>⇒ • 위탁 교육형(교외 활동형)</p>	
	<p>⇒ • 사이버 인권교육(미디어를 이용한 인권교육)</p>	
<p>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천 프로그램의 실천 방법</p>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공교육 내에서의 안정화</li> <li>• 인권 관련 자료 정리 및 교재 확보</li> <li>• 인권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li> <li>• 인권교육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천</li> </ul>	

#### 4. 정책제언

###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20-R18

##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4
3. 연구추진의 구조적 체계 ..... 6

## II. 선행연구 검토

1. 학생 인권교육의 개념적 특징 ..... 9
2. 학생 인권교육의 실태 ..... 12
3. 학교 인권교육이 고려해야 할 사항 ..... 14

## III. 인권교육의 실천: 황금율(黃芻律)보다 은율(銀律)로

### 먼저 배우는 인권

1.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담론 ..... 21
2.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 교사, 학교, 교육청의  
방향성 제시 ..... 25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권교육 ..... 50

<b>IV.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천 프로그램 설계 방안</b>	
1.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천 프로그램 설계의 틀	57
2. 학생 인권교육 현장실습 유형별 프로그램 설계	71
3.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타당성 조사결과	77
4.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천 프로그램의 실천 방법	80
<b>V. 결론 및 제언</b>	
1. 학생 인권교육의 제도적 개선	85
2. 학생 인권교육의 법제화	87
3. 학생 인권교육의 전담기구 설립	87
<b>참고문헌</b>	<b>89</b>
<b>부 록</b>	<b>97</b>

## 표 목차

표 I-1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5
표 I-2	학생 인권교육에 관한 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설계 구조적 체계	6
표 II-1	UN이 제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개념적 특성	9
표 II-2	이종태 외(2005)가 제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개념적 특성	10
표 II-3	인권교육 연구학교의 인권교육 내용의 예	15
표 II-4	인권교육 연구학교의 인권 친화적인 환경구성 실천의 예	17
표 II-5	인권교육 연구학교의 사회적 약자 관련 활동의 예	18
표 III-1	은율로 가르치는 부모의 인권교육	25
표 III-2	독일 하이엘베르크 김나지움의 학교 규칙	41
표 III-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방향(안)	50
표 III-4	온라인 교실에서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배려의 규칙 ON & OFF	53
표 IV-1	인권존중의 가치/태도 형성에 관한 학교급별 내용체계	59
표 IV-2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에 관한 학교급별 내용체계	60
표 IV-3	인권에 관한 법/제도에 관한 학교급별 내용체계	62
표 IV-4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에 관한 학교급별 내용체계	63
표 IV-5	인권 친화적 현실 참여에 관한 학교급별 내용체계	64
표 IV-6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역량과 인권교육 연계요소	65
표 IV-7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성 평가 결과	79

## 그림 목차

그림 II-1 Lister(1991)의 인권교육의 개념적 특징 .....	11
그림 III-1 평등함, 공평(공정)함, 정의로움 .....	24
그림 III-2 온라인 교실에서 다루어져야 할 인권교육 영역의 예 .....	53
그림 IV-1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 요소 .....	58
그림 IV-2 학생 인권교육 실습 프로그램의 운영모델 .....	69
그림 IV-3 광주시 교육청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 메인화면 .....	77

# ○ — 제 I 장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내용 및 방법
- 3. 연구추진의 구조적 체계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권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국가와 사회가 제약 없이 제공해야 함을 규정하는 보편적인 기준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특히, 초·중등학교 과정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둔 제1차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 이후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 관련 교육이 어떻게 구성되고 다루어지는가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가 추구하는 미래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업 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실천방안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도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와 실천이 다양한 방식으로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정부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지난 십여 년 동안 정규교육과정 중에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인권교육의 실천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학생 인권교육 실태에 대한 많은 조사(예, 정원오, 2006; 정해숙, 구정화, 박선정, 최윤정, 2011)들은 인권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을 뿐, 학교현장실습 교육과정 및 교육청 역할 등 학교 현장실습에 대한 표준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교원이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배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장 교육자인 교사는 단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학교 내 인권증진을 도모할 수 있고, 학습자인 학생은 인권 보호 및 존중의 핵심을 실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학교 인권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학생 인권교육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제안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내용 및 방법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실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검토와 새로운 학교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 및 방법을 설정하였다.

### 1) 문헌연구 및 인권교육 실천 사례 분석

문헌 연구와 인권교육 실천 사례 분석을 통하여 학생 인권교육 현장실습에 관한 실천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인권교육 관련 연구와 인권교육을 위한 핵심체계를 확인하여 우리나라의 학생 인권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내용을 적용한 현장실습의 우수사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권교육 연구학교를 비롯하여 실제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교들의 사례를 분석하여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교원의 역량, 학교에서의 역할, 성취내용 및 학생의 참여 방법 등을 확인하여 인권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를 파악하였다.

### 2)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조사

학생 인권교육 현장실습 유형의 다양화 방안을 위하여 학생 인권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관련 선행연구를 탐색하고, 또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함께 학교 현장실습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학계에서 학생 인권 관련 연구를 진행하였던 연구자와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교사 등으로 구성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으로 구성되었다.

- 교육청, 단위학교, 지도교사, 교원양성기관별 역할
- 참가 교원의 자세, 학교에서의 역할, 성취내용 및 역량
- 학교현장실습 운영의 다양화에 따른 각 실습형태별 방안
- 실습학생을 받고 싶은 교사, 학습공동체, 학교 등과 실습학교를 구하는 학생 간 연계방안

표 1-1 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구분	내용
조사대상	- 유관 연구 경험이 있는 연구자 -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교사
선정방법	- 목적적 표집
조사내용	-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관련 부처의 지원 내용 및 교사의 역할 - 교육내용의 구성 및 실습형태별 운영형태 등에 대한 의견
조사방법	- 반구조적인 인터뷰 기법 or Open-ended 설문지법
조사절차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견수렴, 결과의 정리 및 전문가 검토
조사시기	- 8월 중 실시 및 9월 내 결과 분석

### 3) 학생 인권교육 학교 현장실습 표준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제안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자문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실습 표준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설계 및 내용구성, 구체적인 실천 방법 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3. 연구추진의 구조적 체계

표 1-2 학생 인권교육에 관한 학교 현장실습 프로그램 설계 구조적 체계

구분	핵심내용
연구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학생인권교육의 개념정리 및 실태 파악</li> <li>- 학생 인권교육에 관한 사례 분석을 통한 학생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체계 도출</li> </ul>
연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행연구 분석과 우수사례 검토에서 도출된 구성 체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li> <li>- 학교 현장에서 유형별, 실습별로 가능한 표준 프로그램 안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의견조사</li> </ul>
연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정부 차원의 역할 구체화를 통한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요소의 도출</li> <li>-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학교 현장실습의 성공적 추진방안 제시</li> </ul>
단/장기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기초 제공</li> <li>◦ 인권교육의 실태 파악을 통한 현시점의 문제점 파악을 통한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학문적 기반 구축</li> </ul> </li> <li>- 정책적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li> <li>◦ 학교,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천의 구체적인 모델 제공</li> </ul> </li> </ul>



## 제 II 장 선행연구 검토

- 1. 학생 인권교육의 개념적 특징
- 2. 학생 인권교육의 실태
- 3. 학교 인권교육이 고려해야 할 사항





### 1. 학생 인권교육의 개념적 특징

인권교육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한 방법적인 접근을 교육하는 것으로 학생이 자신의 권리 및 타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균형적인 이해를 갖추고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구정화, 설규주, 송현정, 2004). 하지만, 이와 같이 보편적으로 정의되는 인권교육의 개념적 특성을 명료하게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구정화, 2010). 따라서 이와 같은 인권교육의 대한 개념을 명료화하지 못하는 문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만한 연구의 부재를 초래하였다(구정화, 2010). 따라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개념적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II-1 UN이 제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개념적 특성

- ①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
- ② 개인의 인격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
- ③ 인종과 국적, 민족, 종교 등이 다른 집단 간의 상호이해 및 우호증진
- ④ 자유민주사회의 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발휘되는 것
- ⑤ 평화적인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 ⑥ 인간 중심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정의를 증진하는 것

먼저, 국제적인 인권교육에 관한 개념적 특성에 대해서 2004년 UN은 「세계의 인권교육에 관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기술을 가르쳐 학습자가 그와 같은 태도를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며, 다음 <표 II-1>과 같은 개념적 특성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이종태, 조난심과 나병현 외(2005)는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보고서에서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관점을 비롯하여 이를 위한 방법 및 요구되는 환경적 요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표 II-2>와 같은 인권교육의 개념적 특징을 정리하였다.

#### 표 II-2 이종태 외(2005)가 제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개념적 특성

- ①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 강조
- ②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일상적인 인권사태와 관련된 내용 중심 교육
- ③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도 인권을 지켜주는 것
- ④ 인권교육에서는 인권 친화적인 교육환경, 특히 민주적인 교실문화와 분위기를 강조
- ⑤ 인권교육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관점 강조
- ⑥ 인권교육은 궁극적으로 사회변화 요구

결국, 국내외 모두가 강조하는 인권교육의 개념적인 특징은 인권 내용을 전달하는 인권에 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과 더불어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한다는 Lister(1991) 주장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권에 관한 교육’은 학습자로 하여금 인권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는 지식전달을 의미하고, ‘인권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가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인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권을 학습하는 당시에 학습자가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실천이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

에서 인권교육 자체가 인권을 완성하는 첫 번째 지점으로 인권에 관한 다양한 가치를 실천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인권교육이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인권교육의 현장인 학교를 비롯한 학생들의 실제 생활의 영역에서 학생이 실천적으로 인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실천적 측면을 강조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구정화, 2010; 이종태 외, 2005; Magendzo, 2005).



\* 출처: 경상남도 교육청(2019) 교육과정으로 실천하는 인권교육 p19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

그림 II-1 Lister(1991)의 인권교육의 개념적 특징

## 2. 학생 인권교육의 실태

유엔은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채택하여 국제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도입을 권고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 유엔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범교과적인 학습주제로 포함하여 통합교과적인 형태로 제도화하여 실시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이뿐만 아니라 이보다 이른 2004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 단위로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예산지원과 함께 각 연구학교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자문함으로써 그동안 이론적 교육에만 치중되어 있던 인권교육을 구체화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구정화, 2010). 이에 2011년에는 이들 연구학교를 비롯하여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정해숙 외, 2011). 이 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학교 교원의 75.7%가 교육과정 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인권교육을 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학생들 역시도 인권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이 이와 비슷했다(초등학생 80.2%, 중·고등학생 65.2%). 하지만 인권교육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정해숙 외(2011)는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이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먼저, 아이러니하게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자신들이 인권교육을 받았다고 보고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여전히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정해숙 외, 2011). 특히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입시로 인한 교육 시간의 부족으로 인권교육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44.7%). 이와 같은 문제와 함께 각급 학교 교원들 역시도 그들이 인권교육을 실행하기는 역부족임을 토로한다(30.3%). 이는 학교에서 이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학에서 인권 관련 교과교육을 받은 경험이 매우 부족하였고, 교원임용 이후 인권 관련 교육이나 연수만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접한 경우가 많았다

(41.1%)고 보고한 것과 관련된다. 더 심각하게 주목해야 할 것은 학생 대부분이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본 경험은 있어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을 알거나 진지하게 고민해 본 경우가 23.5%에 불과하였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설문 결과의 결과는 교사나 학생이나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자신들의 인권 보호나 혹은 타인의 인권존중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인권실천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학교의 70%가 인권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지만, 대부분이 인권교육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학교생활이나 교실에서의 학생지도 등과 같은 일반적이고 우연적인 상황을 인권교육의 범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유병열, 2012; 정해숙 외, 2011).

따라서 이와 같은 우리의 상황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가 우선으로 필요하다. 유병열(2013)은 우리의 현실에 적용이 가능한 인권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3가지 제시하였다. 요약하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대로 된 인권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인권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원이 있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존중의식을 기를 수 있는 친인권적인 학교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인권교육 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학교 인권교육이 갖추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3. 학교 인권교육이 고려해야 할 사항

#### 1)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

대부분의 학교 인권교육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이 대다수이며, 소수의 사회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 구정화, 2010; 김영신, 2010; 설규주, 2005). 더욱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인권교육에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다(구정화, 2010). 이는 학생마다 처한 가정생활이 서로 달라 가정생활에 대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의 일상생활이 대부분 학교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이 처해 있는 가정폭력 등과 같은 내용도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선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에 경험하는 인권 관련 문제를 살펴보더라도 ‘집단 괴롭힘, 끼리끼리 놀기, 비인격적인 체벌, 학교 중퇴, 교사의 편견, 종교의 자유, 소지품 검사와 같은 사생활 보호의 문제 등’이 있다. 게다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학생들이 경험하는 인권 관련 문제 역시 ‘성희롱이나 성폭력, 학원 문제와 여가시간 부족, 놀이와 문화를 즐길 공간의 부족, 선거권 연령 제한, 어른들의 반말 경험 등’으로 다양하다(UNESCO 한국위원회, 2000). 따라서 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의 구성에서는 학생이 가정, 사회, 학교 등 학교 안팎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인권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교육에서의 현장성과 맥락성, 그리고 학생의 참여를 강조한 형태의 교육내용 구성이 필요하다.

참고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제3기 인권연구학교의 인권교육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다음 <표 II-3>에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교육내용은 학교생활과 관련이 있으며, 주제토론이나, 학교규정 제정 등에 학생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제 학생들이 인권 관련 문제에 가상으로 참여하여 실천해 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구정화, 2010). 사회생활 영역의 경우는 사형제도나 인터넷 문제, 아르바이트 문제 등에 관하여 강연을 듣거나 토론활동을 하는 등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실제 학생들이 직면하게 되는 일상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서술한 인권교육의 개념적 특성에서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권에 대한 본질을 깨우치고 자신의 인권침해의 문제를 제고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교육내용을 완성해야 한다(이종태 외, 2005)는 부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표 II-3 인권교육 연구학교의 인권교육 내용의 예

영역	세부 활동내용 및 방법
학교생활	주제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왕따 문제에서 관용적 태도 필요성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벌점 쿠폰과 칭찬 쿠폰 도입을 주제로 토론 및 사후 의견조사 실시</li> </ul> </li> <li>- 학급 및 학교 규칙 개정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 활동 토론</li> </ul> </li> </ul>
	학교규정 제정 등에 학생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내 안전생활을 위한 소지품 검사의 필요성 검토</li> <li>- 교실 내 체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한 학급 인권선언문 만들기</li> <li>- 학교에서 먹을 우유 시식대회를 통해 학생들 결정</li> <li>- 전교 어린이회를 통한 인권 행동 강령 설정</li> <li>- 학교복지와 관련하여 학생이 꿈꾸는 학교 시설에 대한 논의</li> <li>- 학생, 교사, 학부모의 참여로 용의, 복장, 신발, 두발 등의 규정 논의</li> <li>- 겨울 외투의 색상, 휴대폰 압수문제, MP3 사용문제 등의 규정 논의</li> <li>- 학급별 논의를 통한 우리 반 인권선언문 만들기</li> <li>- 학교 공공 시설물 사용 자세와 규칙 개선안 논의</li> <li>- 학교생활 관련 규정 개정</li> <li>- 토론회 주제: CCTV설치/ 두발 규정</li> </ul>
	참여/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따 체험하기</li> <li>- UCC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학생 성폭력 주제</li> <li>◦ 학교와 종교의 자유</li> </ul> </li> <li>- 왕따, 소지품 검사</li> </ul>
사회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강연</li> <li>- 투명한 인생에 대한 강연</li> <li>- 사형제도에 대한 토론</li> <li>- 토론회 주제: 인터넷 실명제</li> <li>-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사례 발표하기</li> <li>- UCC제작 주제(인터넷 댓글/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li> </ul>

\* 출처: 구정화(2010).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에 나타난 인권교육의 실천적 특성과 한계. p.8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 2)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 구성

인권교육의 개념적 특성에서 자체를 아우를 수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의 구성이다.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의 구성은 학생들의 주요 삶의 터전 자체를 자신 및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한 실천이 가능한 구조를 창출함으로써 실제 삶에서 인권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유병열, 2013). 결국 이와 같은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 구성은 학생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교사나 학부모의 인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한 시도를 포함하며, 또, 학교의 물리적인 환경을 친인권적으로 구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교의 교육과정은 입시 위주로 편성되어 있고, 물리적으로는 학급 자체가 과밀되어 있으며, 교원들의 사회 자체가 부단히 권위적인 특성이 있어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 구성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문용린, 곽병선, 안경환, 한기철, 2003).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2009; 유병열, 2013, p.250-251에서 재인용). 지침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인권 존엄한 주체로서 학생의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의 참여 및 존중, 학생의 책임 있는 삶의 학습, 학생에 대한 공평하고 평등한 대우, 학생의 삶의 향상을 위한 돌봄, 차별 없는 징계 및 구제, 그리고 교권의 보호 및 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교육 연구학교의 인권 친화적인 환경 구성을 위한 실천의 예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연구학교들은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친인권적으로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한 친인권적인 환경을 구성하려고 하였다. 또한, 학생 인권교육의 핵심인 학생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실천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구정화

(2010)는 이들의 실천노력이 실질적으로 학교문화나 조직 교육목표에 인권의 근본적 가치와 원리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표 II-4 인권교육 연구학교의 인권 친화적인 환경구성 실천의 예**

■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친인권적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도서 확충 및 인권도서관 운영</li> <li>- 인권 나눔 게시판으로 인권에 대한 교육 자료, 서적 등 게시</li> <li>- 학급 게시판에 학급규칙과 인권 관련 내용 게시</li> <li>- 중앙현관과 복도의 인권게시판에 인권포스터 게시</li> <li>- 학교 복도에 인권체험사례, 포스터, 패널, 표어 등 부착</li> <li>- 홈페이지 인권교육 코너 운영</li> <li>-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인권방 구축</li> <li>- 인권 관련 내용 아침방송 실시</li> <li>- 인권 친화적 급훈 제작</li> <li>- 인권 상담의 날 설정</li> <li>- 학생 대상 칭찬 열매 달기</li> <li>- 폴라로이드 사진 화해메시지, 화해우체통 운영</li> </ul>
■ 학교 문화의 친인권적 환경 구성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1회 '인권교사 다짐에 따른 자기 점검' 실시</li> <li>- 교사토론회를 통해 친인권적 학교문화 조성 방안 논의</li> <li>- 교사 워크숍: 인권 관련 특강과 성희롱예방 교육 실시</li> <li>-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지침, 인권 교육방법, 사이버 성차별 연수, 행복한 교실을 꿈꾸는 학급경영연수 등 관련 교사 연구 실시</li> <li>- 학부모 연수: 성폭력 예방, 게임중독 치료, 체벌 대신 긍정적 훈육법, 인권 친화적 소통법 등</li> <li>- 학부모 대상 인권소식지와 가정통신문 활용 인권 안내</li> </ul>
학생의 참여와 소통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자치회와 인권탐험동아리를 통해 학교 내 비인권적 요소발견/수정사항 의견 개진</li> <li>- 학생이 참여하여 학생 체벌, 학생복장 등 '학생 생활 규정' 개정 작업</li> <li>- 인권토론회 및 학급문제해결을 위한 학급토론회 개최로 인권 문제 공유</li> <li>- 일일 인권 일기 돌아가며 쓰기(학교일 적기-개인 일기-교사 일기)</li> <li>- 모둠 인권 일기 쓰기(모둠별로 돌아가면서 일기 기록하기)</li> <li>- 인권 존중 실천 기록장</li> <li>- 학생회 간부 선거 공약에 대한 학생들의 메니페스토 운동</li> </ul>

\* 출처: 구정화(2010).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에 나타난 인권교육의 실천적 특성과 한계. p.8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 3)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

이종태와 그의 동료들(2005)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및 이들이 경험하는 인권문제에 대한 학습 역시 인권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이들은 사회적 약자를 온정주의적 관점에서가 아닌 권리의 측면을 고려하도록 교육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인권교육 연구학교의 우리 사회 약자와 관련된 인권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II-5>와 같다.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에 관한 인식의 변화, 여성 등 여러 사회적 약자 집단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들은 이들의 권리의 측면을 이해하고 사회 속에서 이를 해결해 보려는 직·간접적인 노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구정화, 2010; 김영인, 2004).

**표 II-5 인권교육 연구학교의 사회적 약자 관련 활동의 예**

장애인	장애체험	교직원 점자 연수/장애학생 지원 연수
		점자/시각장애인 지팡이체험/지체 장애 체험
	장애인과 함께 화분 만들기	
	시각장애인의 소통법/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배우기	
	장애 관련 비디오 보고 인권 관점에서 토론하기	
	UCC 제작	
다문화 가정	필리핀 출신 학부모 초청하여 필리핀의 자연 및 인문 환경 이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국가와 국기 연계, 외국 어린 노동자 이야기 보기)	
	UCC제작	
여성	양성평등에 관한 비디오 자료 보고 토론	
이주노동자, 위안부 할머니, 학력저하학생, 성소수자, 탈북가정가녀, 해외입양아, 비정규직 등과 관련된 비디오 자료보기, UCC 제작		

\* 출처: 구정화(2010).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에 나타난 인권교육의 실천적 특성과 한계. p.8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 제 III 장 인권교육의 실천:

황금율(黃芩律)보다 은율(銀律)로 먼저 배우는 인권

- 1.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담론
- 2.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 교사, 학교, 교육청의 방향성 제시
-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권 교육





## 인권교육의 실천1): 황금율(黃芩律)보다 은율(銀律)로 먼저 배우는 인권

### 1. 학교 인권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대한 담론

인권교육을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를 가르치는 것’으로 정의하자면, 결국 인권교육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권리를 가르쳐야 할 것인가?’가 핵심이 된다. 이와 같은 교육의 방법을 풀어 놓기 전에 본 장에서는 몇 가지 인권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 1) 인권적 행동이 아니라 인권적 태도 기르기

서양 속담에 “아이는 5살 때까지는 왕처럼 대하고, 10살까지는 종처럼 대하라. 그리고 10살 이후부터는 손님으로 대하라”라는 말이 있다(손병일, 2011에서 재인용). 이는 5살까지는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니 왕처럼 귀하게 대하고, 5살부터 10살까지 종처럼 대하라는 것은 이때가 공동체성과 규칙 지키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적기이기 때문이다. 또, 10살 이후는 자아정체성이 형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성인처럼 정중히 대하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존중받겠다’라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5살에서 10살 사이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이며, 이때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태도를

1) 본 장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생활부장을 역임하면서, 두 아들을 키우는 아버지로 사는 삶을 바탕으로 구로중학교 손병일 교사가 집필한 내용을 전문가들의 의견조사를 토대로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연구자가 각색함.

집중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테면 ‘황금률’보다 ‘은율’을 적극적으로 훈련해야 한다. 나심 텔레브(2019)는 그의 저서 『스킨 인 더 게임』에서 황금률(黃金律)을 “당신이 다른 이들에게 기대하는 그대로의 행동을 다른 이들에게 하라.”로, 은율(銀律)을 “당신이 싫어하는 다른 이들의 행동을 다른 이들에게 하지 마라.”로 예를 들어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황금률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고, 은율은 ‘자신에게 싫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그는 구성원들이 황금률보다 은율을 지키는 사회가 보다 더 건강하고 안정감과 만족도가 높은 사회라고 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은 황금률이 아니라 은율이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에게 ‘상대방의 인권에 좋은 것’보다 ‘상대방의 인권에 좋지 않은 것’, 즉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이어야 한다.

## 2) 자발적으로 인권을 실천하는 자율성의 경험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어떻게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법’을 가르칠 수 있을까? 이는 상대의 인권을 침해했을 때 ‘잘못한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자발성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행동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존재이다. 반면에 타인이 강요한 일을 했을 때는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 책임지려 하기보다 상대방에게 그 탓을 돌리기 일쑤다(Ryan, & Deci, 2017; 금지현, 김진모, 2011; 이민영, 김관웅, 2011). 자신이 선택한 일이 아니라 부모가 강요한 일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 그 결과를 기꺼이 책임지려는 아이는 없다. 그 행동이 자신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주체가 된 사람만이 ‘책임지고자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자녀가 혹은 학생들이 자율적 주체가 되는 경험을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지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 3) 존재의 동등성에 대한 경험: 공정성의 관점에서

인권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이 “모든 존재는 동등하다<sup>2)</sup>”는 인식을 배우는 것이고 (지현아, 2013), 따라서 학교는 ‘존재의 동등성’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존재의 동등성’보다 ‘존재의 차별성’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 곳이 되고 있다. 학령기 초기부터 학생들은 학습지능에 의한 ‘차별성’을 먼저 경험하게 된다. 학습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교사의 관심과 격려를 독차지하기 일쑤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어찌 보면, 인권은 모순적인 개념이며 의식적인 투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모든 존재는 동등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실 안의 학생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동등하지 않은 존재들과의 격렬한 경쟁을 경험하게 된다. 키가 크거나 작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학습지능이 높거나 낮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등등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 안에서 인권교육은 이와 같은 ‘수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고 차별 없이 대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과정에서는 ‘차이가 있는’ 상대방을 의식적으로 인식하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함으로써 나와 동등한 존재임을 자각하도록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이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될 것이다. 이는 상대방의 불리한 조건을 인식하고 이에 대해 공평한 상황을 제시해 주어야 함을 인식하는 것도 포함된다. 결국, 인권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종목적지는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도 개인의

---

2) 여기에서 동등성은 평등함을 넘어서서 공정함/공평함을 의미함(자세한 설명은 [그림 Ⅲ-1]을 참고).

어떠한 불리한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정의로운 사회이자 정당한 사회 일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자신의 불리한 조건에 대한 외적인 지원 없이도 사회 생활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사회로, 사회가 정책적으로 관련된 장애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주는 사회일 것이다.



\* 출처: <https://www.mobilizegreen.org/blog/2018/9/30/environmental-equity-vs-environmental-justice-whats-the-difference> 에서 2020년 9월 2일 인출, 차용하여 연구자가 편집함.

### 그림 III-1 평등함, 공평(공정)함, 정의로운

여기까지 은율로 바로 세우는 인권교육 방향의 재설정에 대해서 논해 보았다. 이후에는 학부모와 교사, 학교장, 교육청 순으로 ‘은율의 관점에서 힘써야 할 인권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 2.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학부모, 교사, 학교, 교육청의 방향성 제시

한 아이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는 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교와 교육청 등의 교육공동체 차원에서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 장에서는 인권교육의 실천을 위한 각 단위들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이들 교육공동체가 이끌어 가야 할 인권교육의 방향을 간단히 요약하면, ‘(자율적) 주체성’과 ‘(존재의) 동등성’을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들 수 있다.

### 1) 학부모가 이끌어 가야 할 인권교육

가장 근본적으로 인권교육이 시작되는 곳은 가정이다. 가정에서의 인권교육은 앞서 논의한 ‘(자율적) 주체성’과 ‘(존재의) 동등성’의 관점에서 그 방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표 III-1 은율로 가르치는 부모의 인권교육

부모의 역할	
주체성을 가르치는 부모	- 아이에게 ‘좌절’을 가르치기 - 질문을 통해 아이가 ‘좋지 않음’을 분별하게 하기
동등성을 가르치는 부모	- 놀이를 통해 공감과 공간(In the space) 키우기 -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 - 삶의 동등한 주체로 양육하기

#### (1) 주체성을 가르치는 부모: ① 아이에게 ‘좌절’을 가르치기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권교육의 핵심은 학생이 자신의 권리와 함께 타인의 권리를 동시에 인식하여 자신이 누릴 권리와 타인이 가진 인권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것이다(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2011).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때, 현재 우리의 교육은 대체로 ‘너의 권리’

‘너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쟁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식인 듯하다. 이는 힘든 고난의 시기의 연속이었던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일제 식민지와 한국 전쟁을 겪고도 수십 년간 독재 치하에서 억압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현대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투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보다 투쟁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얻어내는 일에 힘써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 역사를 살아온 부모이거나 그러한 부모에게 배웠던 자녀들이 자신들의 자녀에게도 역시 타인을 존중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존중받는 것을 무엇보다 더 중요시하며 교육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이정은, 2013). 하지만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가정에서 아이에게 황금률보다 은율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 자녀가 ‘무엇이 좋은 것인가’보다 ‘무엇이 좋지 않은 것인가’를 배우게 하는 것이다. 프랑스혁명을 통해 최초로 인권을 모든 민중에게 부여한 프랑스의 유아 인권교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공장소에서 칭얼대거나 보챌 때 엄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안 돼(농, non)”, “기다려(아당, attend)”라고 말한다. 또는 “현명하게 굴어(사주, sage)”라고 명령하는 데, 이는 아이에게 ‘좌절’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어릴 때부터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알려준다. 이처럼 프랑스 사회는 어릴 때부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계를 명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사회 전반에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 출처: 한계례(2013.3.22.). 프랑스 자녀 행복 교육법 “좌절을 가르쳐라”의 내용을 연구자가 재구성함.

우리나라 부모들은 보통 아기가 울거나 보채면 달려가서 배고픔이나 축축함을 바로 해결해 준다. 이와 달리 프랑스 부모들은 몇 개월 된 아이가 밤에 울거나 칭얼대도 곧바로 달려가서 젖을 물려주지 않는다. 5분에서 10분 정도 아이를 관찰

하면서 기다리며,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아기에게 일종의 좌절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다. 배고픔이나 축축함을 곧바로 해결해 주면, 아이는 스트레스가 즉시 해소되는 것이 정상 상태라고 인지하게 된다. 이렇게 ‘좋은 것’에 먼저 익숙해진 아이는 ‘싫은 것’을 배워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된다.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 자란 아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할 때 ‘은율’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다.

반면에 5분에서 10분 정도 ‘좋지 않은 것’(배고픔, 축축함 등)을 경험함으로써 좌절을 배운 아이는 타인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은율’을 수월하게 배우게 된다. ‘좌절 교육’을 제대로 받고 성장한 프랑스 아이들은 생후 18개월 정도만 돼도 공공 식당에서 유아 의자에 앉아서 차분히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릴 줄 안다. 그뿐만 아니라 생선 요리나 채소 요리도 불평 없이 잘 먹는다. 우리나라 부모들도 아이를 위해 ‘좌절 교육’을 먼저 가르치도록 변화되어야 하겠다. 좌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아이는 나중에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를 제어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 주체성을 가르치는 부모: ② 질문을 통해 아이가 ‘좋지 않음’을 분별하게 하기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유대인의 가정교육은 그들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교육이다(전성수, 2012).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나이부터 항상 아이의 생각을 묻는다고 한다.

“네 생각은 뭐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이의 부모의 질문을 듣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인지 생각하게 된다. 이때 아이는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 좋은 것을

분별하는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의 질문은 아이가 은율을 배우게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아이는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타인에게 좋지 않은 것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의 현명하고 지속적인 질문은 아이가 은율을 체득하게 해 줌으로써 ‘자신에게 싫은 것을 타인에게 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기르게 해준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에게 질문을 통해 교육하는 일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한창 호기심이 생긴 아이가 질문하면 이런 말로 무시하는 일도 많다.

“넌 그런 건 몰라도 돼.”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그런 건 크면 다 알게 되니까 넌 공부나 해.”

이처럼 질문과 호기심이 무시당한 아이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에 무감한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질문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아이에게 물음으로써 ‘선택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모가 “저녁은 무엇을 먹고 싶으냐?”고 물으면 아이는 고기든 채소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선택을 통해서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고, 결정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배우게 된다. 인권적 태도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경험을 하며 자란 아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될 것이다. 저녁으로 먹게 될 피자 선택권을 얻은 아이가 평소 싫어하던 채소가 많이 든 피자를 선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아이는 자신이 선택한 일이기 때문에 채소가 많이 엮어진 피자일

지라도 ‘남기지 않고 다 먹음’으로써 자신의 결정에 책임질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에서부터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는 훈련을 해본 아이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을 했을 때도 순순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일 것이다. 사과나 배상을 통해서 스스로 책임을 저본 아이는 똑같은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 훈련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타인에게 은율을 지키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는 은율이 보편화하여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로 발전되어 나갈 것이다.

### (3) 동등성을 가르치는 부모: ① 놀이를 통해 공감과 공간(In the space) 키우기

상대방에게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다. 상대방의 존재를 자신의 마음속 공간(In the space)으로 모시는 것이다. 상대방의 감정이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공감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이 나타난다.

아이는 자라면서 유치원에 가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게도 된다. 그러면서 친구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상황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때 마음속 공간(In the space)이 열려 있는 아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살펴볼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친구가 짜증이나 화가 난 이유를 헤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마음속 공간(In the space)이 막혀 있는 아이는 친구를 적으로 여기고 싸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의 공감 능력(In the space)은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키워지게 될까. 그것은 ‘충분히’ 그리고 ‘즐겁게’ 노는 활동을 통해서 길러지게 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는 ‘놀 권리’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 생활과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당신의 아이는 충분히 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는 가정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원 없이 실컷 놀아야 할 나이에 학원을 오가며 학습 노동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점점 심화하고 있어서 아이들의 학습 노동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치원부터 시작되고 있기도 하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10월 한국에 이렇게 권고했다고 한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2.16.).

“학업 성적에 대한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아동의 놀이가 매우 부족한 점이 우려스럽다.”

“모든 아동이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시설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 정부도 아동의 놀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포용국가 아동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누리과정 중 ‘놀이 중심’으로 개편하고, 하루 한 시간 이상 또래와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쉬는 시간을 활용해 친구들과 놀 수 있도록 두 번의 수업을 하나로 합치고, 쉬는 시간을 모아 30분 정도의 중간 놀이시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모형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한다.”(경향신문, 2020.6.11)

하지만 정부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아이들의 놀 권리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충분히 놀아야 할 시기에 과부화된 학습 노동에 시달리거나, 게임이나 유튜브에 빠져 있게 하는 건 아이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부모의 자각이 필요하다. 주말 등을 이용하여 아이와 놀아주는 활동을 늘려가야 하며 다른 친구들과 놀 수 있는 동아리 활동 등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자전거 타기, 인라인스케이트, 블루마블 게임 등 어린 시절에 가족들과 즐거운 놀이를 통해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자란 아이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신은수, 2002).

#### (4) 동등성을 가르치는 부모: ②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는 대화

기본적으로 인권은 인간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무엇을 존중하는 것일까. 인간의 특성은 보통 이성과 감정, 의지 등으로 나눈다. 뇌 과학자들은 인간성의 핵심은 감정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우리는 이성이나 의지보다 감정이 존중받았을 때 인간으로서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얻는다. 마찬가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감정이 존중받았을 때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고 느낀다(도현심 외, 2013). 아이가 감정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일은 대부분 부모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 부모에게 감정을 존중받으며 건강한 소통을 해온 아이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다른 아이들과도 건강하게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홍선미, 이유미, 2018). 부모에게 배운 대로 다른 아이들의 감정을 존중하며 소통하려고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아이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 감정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것 자체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행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 자녀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일의 핵심은 자녀의 감정을 존중해 주는 일이다(박봉규, 2011). 부모가 그들의 자녀가 충분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까지 들어주었을 때, 자녀들은 자신의 존재가 부모에게 수용되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무시하며 호통을 치거나, 눈빛이나 표정으로 으박지르는 것은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 행위일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의 잘잘못만 따지면서 자녀가 자신의 행동을 일으키게 한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역시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하는 자녀의 인권교육은 부모-자녀 간의 소통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감정 교육을 제대로 받으며 자란 아이는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것이다.

### (5) 동등성을 가르치는 부모: ③ 삶의 동등한 주체로 교육하기

인권침해는 대개 나(우리)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타자를 적대시하는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이를테면 친구와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유형의 아이가 있다. 이런 유형의 아이는 홀로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 친구와 ‘함께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있거나 ‘함께 혐오해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하므로 지속해서 희생자를 만들게 된다. 이때 희생자가 되는 아이는 집단에서 가장 약자인 경우가 많다. 집단에서 가장 해로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아이는 부모로부터 지속해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현장 전문가 자문회의 중 의견).

1989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들 당시 유엔전문기구 구성원들은 ‘아동은 부모에게 속한다’는 표현을 쓰려고 했다. 하지만 회의를 거듭하면서 아동은 부모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최종적으로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는 표현으로 결정되었다(김민아, 2010).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부모는 자녀를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양육 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로 여겨야 한다. 자신들의 자녀를 자신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과 동등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한 예로, 가족회의를 열어 자녀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것도 자녀를 가족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존재로 대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가족회의는 자녀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 생각을 찾아가게 하는 좋은 훈련이 된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라든가 취침 시간, 학원의 선택이나 자기주도학습량 등에 대해 가족회의를 통해서 자녀들과 부모가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부모의 의견을 듣는 훈련을 경험한 아이는 인권의식을 지닌 민주 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 2) 교사가 이끌어 가야 할 인권교육

부모가 지향해야 할 인권교육의 방향성에서 아이들을 자율적 주체로 교육하는 것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한다면, 교사가 가르쳐야 할 인권교육의 핵심적 요소는 학생들에게 동등성과 공평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다.

### (1) 동등성을 일깨워 주는 교사: ① '존재의 차별성'을 느끼지 않는 교실 만들기

2019년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에서 전국 중고등학생 2,871명을 대상으로 한 <2019 전국 학교생활-인권 실태조사>에서 '교사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설문 결과 1위는 '학생을 존중하는 태도'(50.8%)였고, 2위는 '학생과 소통하는 수업'(34.8%)이었으며, '차별하지 않는 태도'(32.0%)가 3위를 차지했다. 이를 보면 학생들의 80% 이상이 교사가 차별하지 않고 인권을 존중해 주기를, 즉 인간으로서 동등하게 대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영선, 2020).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이다. 그 사회의 축소판인 학교에서 '존재의 동등성'이 실현되는 일은 많은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 학교는 '존재의 차별성'을 전방위적으로 경험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학습지능'에 따라 천차만별의 차별적 경험을 당하게 된다. 핀란드나 덴마크, 독일 등 교육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학생들은 존재의 차별적 경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생활을 하고 있다(여유진, 김수정, 구인회, 김계연, 2007).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했던 현직교사는 신학기가 되면 한 반이 된 여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서열이 정해진다고 한다. 서열의 기준은 성적과 성격이 되는데 성적이 높고 성격이 좋을수록 친구로서 안전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해당 교사는 최근에 학생들 사이에서 차별적 요소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외모'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경우 대도시 외에는 여학생들이 대학생이 되어도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나라 학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여학생들의 화장이 일반화되어 있다. 외모를 가꾸지 않는 여학생은 친구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거나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기성세대의 외모 중시 문화가 학생들에게 전염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아이들은 학교 내에서 성적과 집안의 재산, 외모, 운동 능력 등으로 차별당하는 경험을 무수히 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존재의 동등성을 상실해 갈수록 학생들의 관계는 인권에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다.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인 학교폭력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겪게 되는 차별적 경험이 극대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성적, 능력, 외모, 재산 등으로 서로를 차별적으로(나아가 적대적으로) 인식하게 된 아이들의 의식이 빚어낸 폭력적 결과물인 셈이다.

## (2) 동등성을 일깨워 주는 교사: ② 칭찬과 경쟁이 없는 교실

본 과제를 위해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아이들이 동등성을 느끼는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과 칭찬이 없어야 한다고 현장 교사들은 지적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에 호응해 주고 대답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칭찬과 감탄을 자주 표현한다. 하지만 이런 칭찬은 그리 교육적이지도 않고 인권적이지도 않아 보인다. 칭찬받는 아이를 제외한 다수의 학생들이 스스로를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칭찬에 있어서도 지켜야 할 것은 황금률보다 은율이다. 소수의 학생에게 좋은 것(칭찬)을 하는 것(황금률)보다 다수의 학생에게 좋지 않은 것(열등감, 패배의식)을 하지 않는 것, 즉 은율이 지켜지는 교실이 훨씬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공간이 되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학교는 7학년까지 시험도 없고 등수도 매기지 않는다고 한다(오연호, 2014). 덴마크 교육은 학생들끼리 경쟁을 시키지 않는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 덴마크 학교는 “학생들은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그들을 모두 포용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덴마크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네가 최고다”라는 칭찬이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우와 잘하는데? 최고다!”라거나 “니 정말 훌륭하다”는 말일 것이다. 그만큼 교사가 잘하는 학생들의 능력에 감탄하는 동안 다른 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이 열등감이라는 사실에 무감각한 것이다. 덴마크 교사들은 “네가 최고다”라는 말 대신에 “다른 친구들을 도와줘라”라고 말한다. “학생들에게는 경쟁보다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덴마크 학교에는 성적우수상이라는 것이 없다. 우리나라에서 그토록 떠받들고 있는 학업 지능이 덴마크에서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능력 중 하나에 불과하다. 어떤 학생은 수학을 잘하고, 어떤 학생은 스포츠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학생은 청소를 잘한다. 찾아보면 어떤 학생이든지 다른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점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이유로 덴마크 학교에서는 잘한다고 치켜세워 학생들을 우쭐하게 만드는 일을 금기시한다. 대신에 다른 친구를 도와주라고 함으로써 협력과 배려를 배우게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협력수업’과 ‘배움의 공동체’ 수업이 확산되고 있다(노상우, 2015). 현장교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교사는 작년에 협력수업을 경험한 학생들은 올해 초 코로나-19로 인한 긴 온라인 수업만을 한 후 등교한 후에도 같은 반 친구들과 관계가 유난히 친밀하면서도 안정적이었다고 찬사하였다. 간혹 튀는 행동을 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그런 학생조차 서로 수용해주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1학년 담임 선생님들과 교과 선생님들이 매주 세미나를 하면서 수업혁신에 힘쓴 결과였다고 그 교사는 ‘협력수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특히 해당 중학교는 두발과 교복이

자율화되어 학생들이 원하는 머리 스타일과 복장으로 등교하고 있고, 이런 자율적인 분위기에서 학생과 교사가 서로 인간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선생님들이 경쟁을 배제하고 협력과 상생의 수업을 진행해 온 결과로 보였다. 또한 은율(경쟁과 칭찬을 금함)이 지켜지는 교실에서 학생들의 행복도와 안전성이 더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 (3) 주체성을 키워주는 교사: ① 학생들의 조산원이 되어주는 교사

‘촛불 청소년 인권법제정연대’의 <2019 전국 학교생활-인권 실태조사>에서 고등학생들의 47.3%가 중 ‘최근 1년간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 있다’고 밝혔다(조영선, 2020). 대체로 이들은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무기력, 학습에 대한 무동기를 그 이유로 설명한다. 이와 같은 학업중단 의지를 초래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현실적인 목표는 상급학교로의 진학이다. 중학생들은 특목고나 자사고 등 우수한 고교 진학을 목표로, 고등학생들은 명문대나 인서울(in Seoul)을 목표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면서도 변함이 없는 일제식 암기 교육을 받고 있다. 지식 위주의 수업을 받는 동안 학습능력이 뛰어나지 못한 많은 학생들은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경험을 쌓아 나가게 된다. 이 소외는 학생의 인간성을 지속적으로 훼손시킴으로써 학생 인권을 침해하며, 이를 당하는 학생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 인권존중이나 침해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들이 수업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수업의 주체가 되는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학생 인권을 바로 세우는 교사의 첫 번째 책무이기도 하다.

파멜라 메츠(2003)는 『배움의 도-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를 위한 노자의 도덕경』에서 ‘조산원 교사’를 이렇게 표현한다.

슬기로운 교사는 가르칠 때 학생들이 그가 있는 줄을 잘 모른다. 다음가는 교사는 학생들에게 사랑받는 교사다. 그 다음가는 교사는 학생들이 무서워하는 교사다. 가장 덜된 교사는 학생들이 미워하는 교사다. 교사가 학생을 믿지 않으면 학생들도 그를 믿지 않는다. 배움의 싹이 틀 때 그것을 거들어 주는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진작부터 알던 바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가 일을 다 마쳤을 때 학생들은 말한다. '대단하다! 우리가 해냈어!'

\* 출처: 파멜라 메츠 (2003) 『배움의 도-가르치는 이와 배우는 이를 위한 노자의 도덕경』 (민들레, 29쪽)

여기서 강조하는 '조산원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들이 지식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교사다. 학생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수업은 교사의 적절하고 예리한 질문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생들의 '생각하기'와 '말하기'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의 관건이다. 교사의 질문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수업은 학생들이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짓밟는 현실을 뚫고 '주체성'을 실현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을 발휘한다.

#### (4) 협업을 통한 교사의 역량 강화: 교실을 옹으로써 인권을 여는 교사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교사들은 수업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신이 수업하는 교실을 다른 교사들에게 여는 것은 교사로서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일 것이다. 교실을 여는 것은 자기 수업의 단점과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교실 열기는 교사에게 놀라운 통찰을 안겨주기도 한다. 교실을 연 교사는 여러 교과 교사들과의 수업 나눔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된다. 그 관점은 아이들을 더 많이 이해하게 해 주고 아이들과 더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데 도움을 주며 수업을 개선하는 일에도 큰 도움을 준다.

다른 교사의 수업에 들어간 교사들 역시 자신의 수업에서와는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된다. 자신의 과목에서는 존재감이 없던 학생이 다른 과목에서

큰 흥미와 능력, 나아가 매력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 학생에 대해 더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된다. 그런 이해는 자신의 수업에서 그 학생을 더 수용하게 해 주고 그 학생의 장점을 살려주는 교육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실을 여는 일은 학생과 교사의 참된 만남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한, 그럼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높아지는 수업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 (5) 학부모가 참여하는 인권교육: “부모님 초청의 밤”

오늘날의 교실은 차별과 혐오의 지뢰가 매설된 공간 같다. 비교적 정상적인 관계로 보였던 학생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언제 차별과 혐오의 폭탄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배경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은 무수한 차이가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를 동등한 존재로 인식하고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권적인 태도다. 그런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등한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어야 할 곳도 교실이다.

서울시 구로구의 한 중학교 교사는 자신이 맡은 학급 아이들이 동등성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하려고 매년 ‘부모님 초청의 밤’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이 행사의 주요 목적은 학생들에게 ‘가족공동체로서의 친구’를 서로 만나게 하는 것이다. 행사를 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 학생들에게 ‘부모님 칭찬 일기’ 쓰기 과제를 하게 한다. 일상 속에서 부모님을 몰래 칭찬하고 일기를 쓰는 과제이다. 부모님 칭찬 일기는 부모님 초청의 밤 행사 시 전체 학생과 부모님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는데, 실제 행사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행사장에는 학생 옆에 부모님이 앉고,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대형(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나란히 앉게 된다고 한다. 이때 학생들은 친구가 발표하는 칭찬 일기를 들으며 옆에 앉아 있는 부모님의 얼굴도 보게 된다. 그런 과정을 통해 친구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녀인

지를 느끼게 된다. 이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은 모든 반 친구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동등한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이때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 한 분이 오시도록 하여 한부모 가정을 배려한다. 부모님이 바쁘신 경우 조부모님이나 이모님 등이 참석하기도 한다고 한다. 한번은 한 학생 부모님의 중요한 선약으로 인해 옆집 아주머니가 대신 참석한 일도 있었다. 그래도 아무 문제없이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누군가 학생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해당 교사는 부연 설명하였다. 칭찬 일기 발표가 끝난 후에는 해당 교사가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소통’에 대해 30분 정도 강의를 진행하는데, 그리고 나면 부모-자녀 관계가 사뭇 달라지는 멋진 행사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특히, 행사를 통해 ‘친구의 부모님이 자신의 얼굴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아이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친구의 부모님이 내 얼굴을 알고 있고, 내 부모님이 친구의 얼굴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이게 해 준다. 그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도 한자리에서 만나 서로의 얼굴을 익힌 경험으로 인해 이후 학생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된다.

‘부모님 초청의 밤’ 행사처럼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이 존재의 동등성을 배우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

### 3) 학교가 선도해 가는 인권교육: 학생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키워주는 학교

#### (1) 공론화를 통해 학교 규칙을 최소화하기

학교는 학교 근본적인 운영이 학생자치에 의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 학교에서 학생회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생자치는 금연 캠페인이

나 선도부 활동 등 봉사활동 정도가 대부분이다. 영국의 [서머힐] 학교처럼 전교생이 매주 모여서 전체회의를 통해 생활규칙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주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3년 동안 지켜야 할 학교 규칙을 정하는 일은 전교생의 공론화를 거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학교가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규칙들은 지나치게 많다. 벌점 규정, 선도위원회 규정, 용의복장규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교권침해위원회 규정 등이 그것이다. 학교 규칙은 원칙적이고 단순할수록 좋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지적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생활 원리를 익히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규칙이 ‘행위’의 언어가 아니라 ‘원칙’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조영선, 2020). 또한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에 대해 규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행동이 왜 문제인지 구성원 전체가 토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은 상황마다, 그리고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모두가 벌을 내리는 데 동의하는 규칙은 타인에 대한 폭력 등 몇몇 영역으로 최소화될 수밖에 없으며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 이처럼 공동체의 규칙이 ‘행위’에 대한 언어가 아니라 ‘원칙’에 대한 언어로 규칙화되었을 때 ‘타인에게 좋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은율이 더 강조되고 잘 지켜질 수 있다. 그럴 때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함으로써 자신의 인권도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김나지움의 학교 규칙은 규율이 어떻게 최소화되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교 규칙이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규칙이 될 때 더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지켜지는 원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표 III -2 독일 하이엘베르크 김나지움의 학교 규칙

- 학교의 구성원들이 모두 존중하고 배려한다.
  - 어떤 정도의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
  -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 외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다.
  - 비판은 건전하고 공정한 해결책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 \* 개별 세부 원칙
- 학생이 지켜야 할 원칙: 폭력 사용하지 않기, 객관적으로 해결점 찾기, 수업을 방해하지 않기, 학급공동체를 모두에게 열려 있도록 통합하기 등
  - 학부모가 지켜야 할 원칙: 자녀의 인격적-사회적 발전을 장려하기, 학교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등
  - 교사가 지켜야 할 원칙: 전문성 있는 수업하기, 학생에게 적절한 도움 주기
  - 관리자가 지켜야 할 원칙: 구성원의 이해를 공정하게 조정하기

\* 출처: 조영선(2020).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p.170.

#### (2) 학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학교

인간에게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을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한다. 고통을 표현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 고통 자체보다 더 인간을 힘들게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EBS 다큐프라임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1부 [학교 변화의 열쇠]에 나오는 영림중학교 박래광 교장은 교장실 옆에 커다란 게시판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는 학생들이 써놓은 글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 주며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필요 시 교사들과도 학생들의 의견을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찾아가도록 유도하기도 한다(EBS 다큐프라임, 2020).

또, 다른 혁신학교인 덕양중학교는 정기적으로 ‘교육 3주체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토론 전에 주제에 대해 교사 대표, 학생 대표, 학부모 대표가 각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온다. 토론의 주제는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이나 ‘교복 자율화’ 등 학생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토론회는 전교생과 전 교직원,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한다. 각 대표의 발언을 듣고 난 뒤 학생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타자를 이해하는 생각의 폭을 넓히게 된다. 물론 학생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생들은 대토론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충분히 표현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건강한 공동체성도 함께 느끼게 된다.

때로는 학생들이 거친 표현이나 걸리지 않은 감정을 드러낼 때도 있다. 하지만 인권은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여 파열을 일으키는 과정을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자신의 미숙한 표현도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에 솔직하고 자발적인 자세로 토론에 참여한다. 이렇게 교사와 동등한 존재로 토론하며 ‘존재의 동등성’을 경험한 학생들은 인권 감수성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3)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학교

학생들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타인의 감정을 모실 공간이 있어야 한다. 최근엔 학생들의 ‘In the space’를 키우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놀이 공간을 조성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전남 영암군 삼호중앙초등학교는 2019년 4월부터 학교 내 건물과 건물 사이 주차장을 사방치기, 과녁 맞히기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바꿨다(경향신문, 2020.6.11). 운동장의 작은 잔디 언덕에는 나무 미끄럼틀이 설치됐고, 집라인 등 모험놀이 시설도 갖췄다. 아이들이 숨어있는 곤충 찾기를 하거나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꾸며졌다. 햇빛 아래에서 뛰놀다 지치면 그늘 쉼터를 찾아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 벤치에 앉아 쉬면 된다. 또 하늘이 보고 싶으면 투명지붕 아래에 설치된 해먹에 누우면 된다. 삼호중앙초등학교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해 진행한 ‘꿈놀이터’ 프로젝트로 그 공간이 이렇게 변화된 것이다.

중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점심시간 등에 자유롭게 놀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제공되어야 한다.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할 수 있게 하고 탁구장을 개방하여 탁구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등에서 보드게임 등을 언제든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놀이를 통해서 여유가 생긴 학생들은 마음속 공간(In the space)이 점점 확대돼 나갈 것이다. 추가적으로, 학교는 교육청을 중심으로 권장되고 있는 학생 카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학생들이 마음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 (4) 학생을 존중하고 환대하는 교문 맞이

EBS 다큐프라임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에서 소개된 덕양중학교는 매일 아침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교문 앞에 나와서 전교생의 등교를 환영해 준다.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그들을 동등한 존재로서 환대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존엄을 느끼게 한다. 덕양중을 본받아 다른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복장과 두발, 지각 등을 단속하고 감시하는 교문 지도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학생들에게 ‘나는 인간이라는 자각’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이 감각은 역설적으로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았을 때 존재를 드러낸다(조영선, 2020).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느끼는 모멸감과 비참함이 인간임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때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이 공간이 날 부당하게 대접했기 때문이다’라고 느끼려면 비교 가능한 다른 공간에서 존중을 받은 경험이 필요하다. 아침에 등교할 때마다 자신의 머리 모양과 복장이 ‘타자’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를 생각하는 학생은 이러한 감각을 곱씹을 여유가 없다.

#### 4) 교육청이 선도하는 인권교육: 교사의 자율성과 학생의 자기주도학습권을 보장해주는 교육청

##### (1) 중앙 집중적 평가 시스템에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 부여로

20세기 중후반 유례없는 경제부흥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팽창하는 산업의 역군들을 길러내는 역할을 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은 엄격한 두발과 복장, 체벌과 훈육, 가혹한 학습 노동을 견뎌내며 중등학교 생활을 보내야 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체벌이 금지되며 교육공동체 공론화를 거쳐 두발 등이 자율화되면서 학교 규칙이 학생 중심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하지만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실에서의 학생 인권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교사의 교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느낌이 든다고 현장 교사들은 지적한다. 학생들은 더 이상 경제 황금기는 오지 않을 것처럼 전 국민이 바라는 '안정적인 전문직'을 얻기 위해 더 치열하게 가느다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위해 경쟁한다. 그 속에서 이들은 더 이상 주체적인 인간도 서로 동등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김수정, 차영화, 최셋별, 2020).

우리 교육은 더 이상 현재와 같은 중앙 집중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에 다다랐다. 수능 1등급과 내신 1등급만을 위한 교육은 이제 변화되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수능 1등급이나 내신 1등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80~90%의 학생들이 날마다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인간성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중앙 집중적인 평가 시스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동기를 갖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임할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다(조영선, 2020). 또한 중앙 집중식 평가 시스템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권을 동시에 침해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교사의 가르칠 권리는 유명무실해진다.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국가의 시험에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발성에 기초하여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이 주어져야 한다. 학생 개개인의 발달 단계에 맞춰 학생의 동기와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유럽의 교육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출판사에도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해석하여 출판할 수 있

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야 교사에게 교과서 및 교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 책임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권을 폭넓게 보장할 때 교사와 학생은 수업을 통해 인간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교육청은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사가 지역과 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럴 때 교사는 학생과 함께 배움의 공동체가 되는 수업을 열어가 수 있을 것이다.

## (2)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권을 보장하는 교육

학생들에게도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영국의 학생들은 아침마다 그날 자신이 학습할 공부 계획표를 짜고, 날마다 그 계획표에 따라 흩어져 이동수업을 한다고 한다(김민아, 2010). 이런 시스템의 장점은 책이나 과목별로 문제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이미 그 단계를 마친 친구가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되어 다른 친구에게 문제풀이를 도와주게 된다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또래 선생님이 되어주는 것은 놀라운 교육적 효과가 있다. 수업 능력이 오르지 않을 때 학생들은 방처럼 꾸민 휴게실에 가서 잠시 음악을 듣기도 하고 다른 책을 읽기도 한다. 이 학교에선 몇 학년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다만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 있는 EBS 다큐프라임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3부 [혁신의 또 다른 상상]에 나오는 미국 아칸소주 포트 스미스의 <퓨처 스쿨>은 전교생이 200여 명인 고등학교다. 이 학교에서는 1명의 어드바이저가 20명의 학생들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대화를 나눈다. 어드바이저와 학생들은 사는 이야기, 성적, 진로, 학교 활동 등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눈다. 어드바이저는 3년 동안 20명과 함께 동행하면서 학교생활 전반을 관리해 주며 학생들의 인턴십이나 대학 진학, 직업 선택 등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준다.

미국의 <오픈 월드 러닝 커뮤니티>는 7개 학년에 60여 명이 다니는 학교이다. 이 학교에도 <퓨처 스쿨>과 비슷한 ‘crew’라는 제도가 있다. crew는 인종과 출신이 골고루 섞인 6~12학년의 학생 20명과 교사 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7년 내내 함께 생활하는데 정기적으로 모여 속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게임을 하기도 한다. <오픈 월드 러닝 커뮤니티>에는 주 1일 학업의 날이 있다. 각자 해야 하는 프로젝트나 공부를 하는 날인데, 이날은 선배에게 도움을 받거나 다른 크루 교사에게 가르침을 받기도 하면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한다.

우리나라에도 인권 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충실히 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들이 많이 있다. 한 해에 수만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이 적응할 수 있는 대안학교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본다.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하였던 한 교사는 10년 전 학급에서 적응하지 못한 1학년 남학생이 대안학교로 옮겨 훌륭하게 중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음을 회고하였다. 당시 그 학교가 교육청 학력 인가 학교인 줄 알았다가 학기말에 미인정 학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성적 산출이 어려웠다고 했다. 따라서 이제는 대안학교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보다 많은 대안학교들이 인가를 받으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학교를 찾아 인간성을 존중받으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학생들의 놀 권리를 지원하는 교육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들이 ‘놀 권리’를 보장해주는 노력도 필요하다. 경향신문의 보도(2020.6.11.)에 따르면, 2017년 2월, 전남도의회 박철홍 의원은 ‘어린이들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진통을 겪은 끝에 4개월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아동의 놀 권리를 선언적 범위를 넘어 첫 자치법규로 명문화한 것으로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 ‘어린이’는 유치원생

과 초등학생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그들의 놀 권리 보장을 통한 건전한 놀이 활성화로 자유롭게 놀면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이 조례를 통해 전남 교육감은 해마다 놀이 활동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놀이시설 안전, 프로그램 보급 등이 포함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 10명 이내로 놀 권리 위원회를 두고 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정책개선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 각급 학교장은 이 같은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해 그 실적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다.

2019년 12월에는 아동 놀이권 확보를 위한 놀이혁신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2.16.).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놀이 혁신위원회는 간담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아동 놀 권리 보장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일을 진행하게 된다.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다른 교육청에도 학생들의 놀이 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 등이 보급되어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겠다.

#### (4) 인권위원회 설치로 학교 갈등의 공동체적 해결 유도

오늘날 학교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다. 학교폭력대책자치법과 교권보호위원회 규정이 있지만, 이들은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그리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 행위를 기록하게 한 학교폭력대책자치법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들의 교권침해 시 강제전학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이 또한 교사와 학생의 진정한 화해와 인간적 만남을 가능케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에 만연한 갈등의 해법으로 교육청은 각 학교에 인권위원회를 두는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조영선, 2020). 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청에 설치된 학생인권위원회

의 역할을 학교현장에 맞게 적용한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학교 구성원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인권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하는 기구이다. 기존의 분쟁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타협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했다. 반면에 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당사자의 관점에서 문제의 해법을 찾는 기구이다.

이를 위해 교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의 대표자뿐 아니라 조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권 전문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인권위원회는 피해자가 학생이든지 교사가든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구제를 신청하고, 그 정도에 따라 '사법 기관으로 이송할 것'과 '절차를 거쳐 가/피해자가 회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한다. 인권위원회는 기존의 학폭위나 교권보호위처럼 가해자에 대한 조치 사항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책,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려는 조치, 가해자 교육, 가/피해자 관계 회복을 지원하려는 조치, 가해의 구조적 해결책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일도 함께 힘쓴다.

#### (5) 인권교육의 정규 교육 과정화

〈인권교육의 증가와 인권 의식 개선의 관계〉에 대한 설문 중 '인권교육 경험을 받은 적이 있다'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경우 2011년 46.0%에서 2016년 79.5%로 증가하였고, 중학생은 2011년 53.0%에서 2016년 72.3%로 증가하였다(유성상, 2020). 또, 학생들은 '학급 친구들이 서로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44.5%. '본인이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58.7%.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73.1%의 응답을 보여, 인권교육의 증가와 함께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개선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이 인권교육에 얼마나 노출되었느냐가 이들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과 강력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설문조사의 대상이었던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낮은 학생 인권 의식과 다양한 인권침해 실태의 내용은 고스란히 인권교육의 부족에 기인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직도 중등학교에서 학생 인권은 교사와 학부모에 의해서, 그리고 학생 스스로에 의해서 적지 않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이러한 현실은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그동안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져 왔던 인권교육이 피상적이고 일회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인권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이 억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인권적 시각에서 표출하는 방법은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학교 내에서 잦은 교사-학생 간의 충돌이나 학생들끼리의 폭력적인 양상으로 억압이 표출되어 왔다. 학생인권에 대해 충실히 교육되었다면 학생들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억압을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을 것이다. 인권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일상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인권교육은 대부분 헌법과 관련하여 교육되어 왔다. 정규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인권이 법적인 권리보다는 일상생활에서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배움을 얻게 될 것이다.

#### (6)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체벌이 전면 금지될 무렵 교사들은 수업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교실은 무너지지 않았고 아이들은 망가지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맞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생활한 아이들은 오히려 중등학교에서 반항이나 저항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교육청은 경기도와 서울, 광주와 전북교육청 4개에 불과하다. 하루속히 모든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들이 예외 없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인권교육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불과 석 달 만에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역사적인 변화의 국면에 다다랐다. 서너 차례의 개학 연기와 함께 학교는 온라인 개학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여 지속하다 다양한 형태로 부분적인 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2020년 7월 초,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간담회를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교육의 다섯 가지 키워드로 지속성, 포용성, 자율성, 적극성, 안전을 제시했다(교육부 보도자료, 2020.7.9). 학생과 교사의 만남, 학생과 학생의 만남이 온라인, 비대면, 원격수업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야기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를 위한 준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특히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인권 등 학교 인권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코로나 시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지향해야 할 인권교육에 대해 논하여 보고자 한다.

표 III-3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방향(안)

- (지속성)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움과 성장의 지속성 확보
- (포용성)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학생이 없도록 보편적 교육 보장
- (자율성)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촉진하는 방향으로 교육체제 혁신
- (적극성) 미래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안전)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장

\* 출처: 교육부 보도자료(2020.7.9.)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18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에서 2020년 7월 27일 인출

#### 1) 학습에 관한 공평한 기회보장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학교가 폐쇄되고 온라인 개학으로 전향을 하면서 보편적인 학습 환경이 사라지게 되고 부모의 영향력, 가정의 경제력, 디지털 기기의 격차

등이 아이들의 학습권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강대중 외, 2020 중 부은희의 글). 막상 온라인 수업에 참여를 해야 한데 어떤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기기가 없었고, 또 다른 학생들에게는 이와 같은 온라인 수업을 옆에서 보조해 줄 보호자가 부재하기도 하였다. 이는 취약계층(저소득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에 그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을 이용한 수업에서 차별력 있는 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저학년의 학생일수록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입시를 앞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의 온라인 학습이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강대중 외, 2020). 이들의 학력의 차이가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격차, 디지털 기기의 활용 가능성으로 번져가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사적 공간에서 한없이 소외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줄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2) 모두에게 개방된 교실에서의 인권문제

온라인 개학과 동시에 교사는 아이들과 연락을 하기 위해 부모를 거쳐야 하고, 또, 이와 같은 교사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이 적나라하게 부모에게 보여지게 되었다. 교실이라는 공간이 교사와 학생만의 전유물이 아닌 가정의 모든 사람, 혹은 의도하는 모든 이에게도 공개되게 되었다. 교실의 문이 이제 학생과 교사에게만 제한되어 열려있지 않고, 모든 관계자에게 개방되었다. 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한 교사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이전보다 더 적나라하게 그것도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공개되면서 이들의 인권침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다른 아이들과 비교·평가되는 상황에 놓이면서 아이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등 예상치 못했던 인권침해의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학년의 시작을 혹은 새 학교에서의 시작을 온라인으로 한 아이들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끼리 자신의 방 또는 집을 공개하여야 했다. 실제로 등교하였다더라면, 자신의 결정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였을 것을 온라인 교실이

열리면서 무차별적으로 공개되어 버린 것이다. 실제 오프라인 속에 존재하던 학교 폭력의 다른 형태로, 무분별한 화면캡처와 비방의 글들이 돌게 되었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사생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상황이 되고 만 것이다.

### 3) 온라인 학습이 보장 해 주는 인권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 학습은 맞춤형 개별학습이 가능해졌다. 교사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산출물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특히 영등포의 한 중학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에 대한 개별학습 지원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한 교사가 설명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의 문제가 사라졌다는 설문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강대중 외, 2020에서 김차명의 글). 또 이예슬(강대중 외, 2020)은 교실 내에서 신체조건, 성적, 배경, 성향, 무리 등으로 만들어졌던 서열 관계나 권력 구조가 붕괴하고 동등한 발언권과 학습 및 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 4) 온라인 교실에서의 인권교육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뿐만 아니라 현실보다 근접한 거리에 서 선생님을 바라봐야 하는 학생들에게도 온라인 교실은 고역스러운 환경일 것이다. Zoom.us를 통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학생을 만나고 있다는 한 교사는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 나타나지 않거나, 카메라를 아예 꺼버리거나 화면을 가리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신의 방이나 집안 풍경을 보이기 싫어 이불 속이나 집 밖의 카페나 도서관에서 참가하는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한다. 이에 해당 교사는 '온라인 교실에서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배려의 규칙'을 제시(〈표 III-4〉)하였다고 한다.

### 표 III-4 온라인 교실에서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배려의 규칙 ON & OFF

- 온라인 교실에서는 카메라 ON 오디오 ON
- 어떤 상황에서도 너그러이 이해하기 ON
- 각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약속 ON
- 타인의 발언권 존중을 위해 기다리기 ON
- 녹음, 사진 촬영 등 OFF
- 타인의 실수에 대한 비난하기 OFF

\* 출처: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2020년 6월 현장 전문가 자문회의(간담회)에서 영등포의 한 중학교 교사가 제공

디지털 네이티브로 지칭이 되는 이 아이들조차 온라인상에서의 공적인 생활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분명 이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나타나는 뉴노멀 상황에서의 인권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 출처: 인권교육@들: <http://www.hrecenter-dl.org/10583/> 에서 2020년 9월 1일 인출.

### 그림 III-2 온라인 교실에서 다루어져야 할 인권교육 영역의 예



# ○———— 제Ⅳ장 학생 인권교육

## 학교현장 실천 프로그램 설계 방안

- 1.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천 프로그램 설계의 틀
- 2. 학생 인권교육 현장실습 유형별 프로그램 설계
- 3.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타당성 조사결과
- 4.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천 프로그램의 실천 방법



## 1.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천 프로그램 설계의 틀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천 프로그램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4가지 핵심요소-인권교육의 내용, 인권교육 강(교)사의 역량, 인권교육의 운영, 인권교육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를 설정하였다.

### 1) 인권교육의 내용구성

이제까지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한 공통적인 영역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학생이 그들의 생활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와 행동 양식을 배우기,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 갖추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화한 내용 구성요소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존중의 가치 및 태도의 형성,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이해,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 그리고 인권 친화적 현실참여로 세분화하여 제안하였다(구정화, 설규주, 송현정, 2004). 또, 김지영(2012)과 한국교육개발원(2018)에서는 이와 같은 인권교육의 내용 영역을 인지적 영역(인권판단), 정서적 영역(인권 감수성), 행동적 영역(인권 행동 의사)으로 구분하여

학교 인권교육에서 함양되어야 할 인권교육의 3대 요소를 제안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p.23에서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내용구성요소를 바탕으로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천 프로그램설계의 틀을 1) 인권존중의 가치/태도 형성, 2)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 3)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이해, 4)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 5) 인권친화적 현실참여로 세분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출처: 구정화, 설규주, 송현정(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의 내용을 연구자가 요약하여 구성함.

그림 IV-1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 요소

### (1) 인권존중의 가치/태도 형성

가장 기본적인 인권교육은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함께 타인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가치 형성에서부터 이를 실천하는 태도로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생애 최초 인권교육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유치원에서 시작하여 초등학교에서 더 심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구정화, 설규주, 송현정, 2004). 이에 대한 학교급별 핵심개념을 소개하면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인권존중의 가치/태도 형성에 관한 학교급별 내용체계

학교급	핵심개념	내용체계
유치원	1) 자기존중의 태도 -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태도 - 청결, 건강을 스스로 보호하는 습관	★ 핵심내용으로 포함
	2) 타인의 권리 존중 태도 - 다른 아동의 안전을 생각하는 태도 - 서로 공평하게 놀이할 수 있는 태도	
	3) 생명 가치에 대한 존중	
초등학교	1) 인권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식 - 존중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의식 - 존중해 주어야 할 타인의 권리의식	★ 핵심내용으로 강조
	2) 인권 보호에 대한 태도 - 자신의 인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 태도 - 타인의 인권 보호에 대한 적극적 태도	
	3) 타인의 권리 존중 태도 - 타인의 권리 방어의 책임 -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인식 - 타인의 의견 경청 - 차이 수용	
	4) 인권 관련 태도 - 관용 - 공동체 의식 - 평화·비폭력 - 공정·공평 - 생명 존중	
중·고등학교	1) 인권에 대한 인식	★ 기본내용으로 포함
	2) 인권 보호에 대한 태도	

\* 출처: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제시한 학교 급별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구정화, 설규주, 송현정(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와 구정화(2018)에서 인용하여 연구자가 요약·구성함.

## (2)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은 자유권, 평등권, 연대권, 그리고 생존권 등을 포함한 의미를 말한다. 이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는 인권교육의 내용 요소로서 인권의 기본개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서 인권 보호의 제도와 관련 문서 등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여 중고등학교 즈음해서는 이를 심화하여 자유권으로서의 인권, 생존권으로서의 인권을 교육할 것을 추천하였다. 또, 구정화, 설규주, 송현정(2004)은 학교 인권교육 내에 자유권적 측면으로서의 인권, 사회권 측면으로서의 인권, 연대권적 측면으로서의 인권을 교육내용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의 범주에 대한 내용 요소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구정화(2018)는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이 지나치게 노동권에 관한 교육에 치우쳐져 있어 자유권적인 인권이나 연대권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 구성과 이를 위한 성취기준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IV-2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에 관한 학교급별 내용체계

학교급	핵심개념	내용체계
초등학교	1) 인권 보호의 제도 - 국가기구 - 인권 관계 법률	★ 초보수준의 도입
	2) 인권 관련 문서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 세계인권선언	
중·고등학교	1) 자유권으로서의 인권 -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생명권 - 신체의 자유와 안전의 권리 - 사생활의 자유 - 거주 및 이전의 자유 -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학문과 예술의 자유	★ 중학교- 핵심내용으로 강조  ★ 고등학교- 기본내용으로 포함

학교급	핵심개념	내용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받지 않을 권리(아동, 여성, 소수민족의 보호)</li> <li>- 정치적 권리(정치적 표현, 선거권 등)</li> <li>- 청구권적 권리(재판청구권, 청원권, 국가 배상청구권)</li> <li>- 표현의 자유(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li> <li>- 경제적 자유(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li> </ul>	
	2) 생존권으로서의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권(근로의 권리, 노동삼권 등)</li> <li>- 보건 및 사회보장의 권리</li> <li>- 인간다운 생활권(빈곤으로부터의 자유, 최저생활권 등)</li> <li>- 교육권(학교선택권, 교육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등)</li> <li>- 지속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권리</li> </ul>	★ <b>중학교-</b> 핵심내용으로 강조  ★ <b>고등학교-</b> 기본내용으로 포함
	3) 연대권적 측면으로서의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권</li> <li>- 자결권</li> <li>- 평화에 대한 권리</li> <li>- 발전권</li> <li>- 인도주의적 재난 구제를 받을 권리</li> </ul>	★ <b>중학교-</b> 기본내용으로 포함  ★ <b>고등학교-</b> 핵심내용으로 강조

\* 출처: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제시한 학교 급별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화, 설규주, 송현정(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와 구성화(2018)에서 인용하여 연구자가 요약·구성함.

### (3)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인권교육의 또 다른 구성요소로 인권에 관한 법/제도의 이해를 도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권에 관한 역사를 비롯하여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내외의 여러 법적인 장치와 제도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인권에 관한 발달적 기원과 함께 이를 위한 국내외의 체제적인 노력, 그리고 국내외 기구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앞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인권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IV-3 인권에 관한 법/제도에 관한 학교급별 내용체계

학교급	핵심개념	내용체계
초등학교	1) 인권보호의 제도 - 국가기구 - 인권 관련 법률 - 인권에 관한 교내외 규칙과 법·제도	★ 초보수준으로 도입
	2) 인권관련문서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 세계인권선언	
중·고등학교	1) 인권개념의 발달 - 사회생활 속에서 갖는 인권의 의미 - 역사상의 인권 - 시민사회 형성과 인권의 발달	★ 중학교- 핵심내용으로 강조  ★ 고등학교- 기본내용으로 포함
	2) 법적 개념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총론적 논의 - 인권의 체계: 자유권, 사회권(노동권), 연대권 - 인권 관련 문서 검토 • 국제문서: UN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협약, 차별철폐에 대한 각종 국제협약 • 국내문서: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 출처: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제시한 학교 급별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구정화, 설규주, 송현정(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와 구정화(2018)에서 인용하여 연구자가 요약·구성함.

#### (4)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혹은 사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권 문제를 찾아내고 이를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원인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영역요소이다. 특히 학생들의 주 생활권인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인권적 요소를 찾고, 혹은 교사가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이들의 실생활 속에서 인권 관련 요소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이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인권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V-4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에 관한 학교급별 내용체계

학교급	핵심개념	내용체계
초·중· 고등학교	1) 인권문제의 분석 - 현대사회에 제기되는 인권문제의 유형 -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법적, 사회문화적 배경 - 인권문제에서의 중요한 변화 - 언어의 사용, 사실 판단, 가치 판단의 구별	★ <b>초등학교-</b> 기본내용으로 포함  ★ <b>중학교-</b> 기본내용으로 포함  ★ <b>고등학교-</b> 핵심내용으로 포함
	2) 인권침해 사례들 - 가정에서의 인권침해 -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 지역사회에서의 인권침해 - 국가적 차원에서의 인권침해 - 세계적 차원에서의 인권침해 -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력들 - 권리 간의 충돌과 갈등	
	3) 문제/주제들을 다루는 전략 - 가능한 대안의 탐색 - 합의의 형성 - 갈등의 중재와 해소	

\* 출처: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제시한 학교 급별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수정화, 설규주, 송현정(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와 구정화(2018)에서 인용하여 연구자가 요약·구성함.

### (5) 인권 친화적 현실 참여

인권교육의 핵심적인 목표이기도 한 인권 친화적 현실참여의 도모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겪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노력과 인권 친화적 행동, 그리고 인권 감수성과 관련된 영역이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인권교육은 학생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인권의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권인식을 자극하고 현실 속에서 인권 친화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표 IV-5 인권 친화적 현실 참여에 관한 학교급별 내용체계

학교급	핵심개념	내용체계
초·중· 고등학교	1) 인권과 현실참여 - 참여의 의미와 필요성 - 참여의 방법 - 참여 후의 평가	★ 초등학교- 초보수준의 도입 ★ 중학교- 기본내용으로 포함
	2) 인권친화적 현실참여(인권신장을 위한 경험 쌓기) - 학교에서의 참여 - 가정에서의 참여 - 사회에서의 참여	★ 고등학교- 핵심내용으로 포함

\* 출처: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제시한 학교급별 인권교육 내용체계를 구성화, 설규주, 송현정(2004)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아침이슬」에서 대 인용하여 연구자가 요약구성

#### (6)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학생 참여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인권의 개념적 지식을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인권교육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학생의 자발성이나 주체성을 보장함으로써 인권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이는 '많이 아는 교육에서 학습량을 줄이고 배움을 즐기는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맥락에서도 범교과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권교육을 모든 학년의 모든 교과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 그리고 교육과정 외의 학생생활교육에 포함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교과의 교육과정 내외에서 이루어져야 할 인권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그리고 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여 인권교육의 실효성과 진정성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한 예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핵심역량과 인권교육의 연계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6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역량과 인권교육 연계요소

핵심 역량	정의	인권교육 연계 역량 강화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인권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실천능력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탐색</li> <li>- 생활 속에 필요한 인권지식 및 문제의 자기주도적인 인식</li> </ul>
지식정보처리 역량	합리적인 인권문제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상황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활용</li> <li>- 인권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등의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의 인권의 문제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li> </ul>
창의적 사고역량	폭넓은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저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에 관한 지식과 실생활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활용</li> <li>-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 속의 인권의 문제를 창의적,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또는 결합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의사결정</li> </ul>
심미적 감성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감, 이해, 다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차이를 인식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li> <li>- 문학, 예술, 대중문화 등을 통해 인권 관련 공감 능력을 향상하고 문화적 감수성을 개발</li> </ul>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생활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여 존중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생활의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인권보장</li> <li>-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용</li> </ul>
공동체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과 세계시민으로서 요구되는 공동체적 태도와 공공의 선을 위한 가치를 함양</li> <li>- 공동체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li> </ul>

\* 출처: 교육부, 제2회 시도교육청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담당자 협의회, 2019. 09.20.의 내용을 학교 인권교육의 내용에 맞게 연구자가 재구성.

## 2) 교수학습 방법 설계 및 개발 가이드 라인(Merrill의 기본원리)

학생 인권교육의 학교현장 실습 프로그램에서의 교수학습 방법 및 개발의 지침으로 Merrill(2009)의 기본 원리인 문제기반(Task-centered), 활성화(Activation), 시연(Demonstration), 적용(Application), 통합(Integration)을 적용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의 지식적 이해를 넘어서 현실 생활 속에서 인권의 문제를 알아차리고 해결하는 인권의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Merrill의 기본원리는 효과적인 인권교육 실습의 요소가 될 것이다.

### (1) 문제기반(Task-centered)

인권의 문제를 지식과 더불어 실생활 속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학생의 실생활과 관련된 인권의 문제를 제시한다.
- 제시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인권의 문제나 요소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권의 문제를 시작으로 사회적인 인권의 문제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제시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제시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지원(scaffolding)을 제시한다.

### (2) 활성화(Activation)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이나 실제 생활 속의 문제들을 끌어내어 학습한 지식에 적합한 실생활의 문제점들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아이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롭게 제시된 지식을 연관 지을 수 있게 돕는다.
- 이미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새로 배운 내용과 연결 지어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 (3) 시연(Demonstration)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지식의 제공과 함께 학습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실례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권의식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권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인 수준의 추상적인 개념과 함께 구체적인 수준의 실제적인 내용이 존재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실제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인권의 내용을 시뮬레이션, 시각화, 모델링 등을 통하여 학습을 촉진한다.
- 인권의 문제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인권의 경험을 제공해 준다.
-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적 설명이 어려울 경우는 적절한 예시나 반례, 절차나 과정에 대한 시각화 방법을 사용하여 제시한다.

### (4) 적용(Application)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에 부합하는 인권의 문제 또는 과제에 참여하여 배운 내용을 적용 또는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생이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반드시 적절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제공한다.

### (5) 통합(Integration)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한 내용과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면서 인권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성취목표를 추구하여야 한다.

- 인권에 관해 새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탐색해 볼 기회를 제시한다.
- 학급 내에서 토론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학습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현실 속의 적용 등에 대한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학교현장실습 프로그램의 구성적 틀을 이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하여 기대하는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해 줄 것이다.

### 3)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운영방향(안): 교육공동체의 역할

#### (1) 학생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운영모델

##### ○ 인권교육의 내용의 체계적 구성

- 인권에 관한 올바른 지식, 태도, 기능 습득을 목적
- 인권에 관한 교육(인지적), 인권을 통한 교육(인권친화적인 학습환경 조성), 인권을 위한 교육(실제 생활에서 인권을 적용 - 본인과 타인의 인권 인식 및 존중)의 조화와 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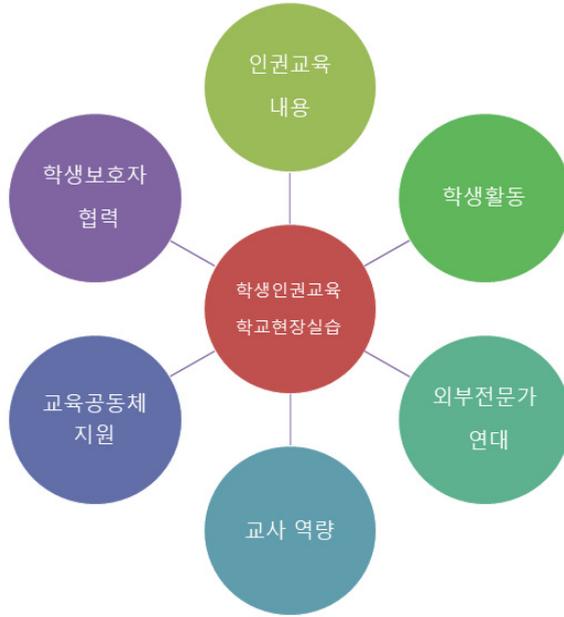


그림 IV-2 학생 인권교육 실습 프로그램의 운영모델

○ 교사의 역량

- 인권 의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풍부한 사례와 직무관련성 내용 필요
- 인권교육적 전문성 함양을 위한 노력
- 인권 교(강)사의 학습공동체 지향/협업
- 친인권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 인권교육의 분화 및 통합교육 경험 확보

○ 학생의 활동

- 인권교육의 내용 요소의 유형 및 목적에 맞는 융통성 있는 활동을 선택하여 진행, 문제의 인식 및 원인분석, 해결방법 모색, 인권에 관한 지식 습득의 다양한 활동을 조합한 학습 활동

○ 교육공동체의 지원

- 학교와 교육청의 유기적인 지원을 통한 인권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교육공동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인권교육 전담기구 설립을 통한 인권교육 실현
- 교육청:
  - 학습자료(교육과정 연계 학생인권교육 지도자료 개발 및 보급) 및 학습 공간에 대한 지원
  - 인권교육 전문가를 파견하여 학교의 인권교육을 지원
  - 인권조례제정 및 공포, 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적 표준화
  - 인권교육에 관한 표준 교안의 제작 및 배포
  - 학교급별, 대상별(학생, 교직원, 학생보호자) 인권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 인권교육 전문인 양성,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평가와 모니터링(인권교육의 평가 지표 및 지수의 개발)
  - 인권교육이 우수한 학교에 대한 표창
  - 관내 인권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와 연계하여 체험 중심의 인권교육이 가능한 통로 확보
- 학교:
  - 학생,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 각 교육청이 정한 학교 인권교육의 계획안에 준하는 교육 시간 확보  
(예, 서울시, 학생은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은 연간 2시간 이상, 학생의 보호자의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 학교인권담당자 협의체 구성 운영
  - 학교 내 인권담당자 지정 및 운영을 통한 학교별 여건에 맞는 교내 인권교육 연간계획 수립 및 실행
  - 인권친화적인 학교 분위기 조성

- 학교 내 인권동아리 운영
- 학교 내 사안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 ○ 외부 전문가와의 연대

- 학교 밖 민간단체의 전문 인권활동가들과 연대(인권교육협력체계 확립)를 통한 다양한 분야의 인권교육 발전을 지향
- 협력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
-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의 기획 및 운영, 평가 등에 대한 인권교육협력네트워크 형성

#### ○ 학생 보호자의 협력

-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가치·태도 형성을 위한 가정 내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 2. 학생 인권교육 현장실습 유형별 프로그램 설계

### 1) 학교 내 인권교육(교내 활동형)

#### (1) 교과목 연계 실습

먼저 학교 내 인권교육은 각 교과교육에서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의 교육과정에서는 사회과, 도덕과 정도에서 인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구성요소를 찾을 수가 있었고, 이외의 교과목에서는 인권교육의 직접적인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각 교과목의 세부적인 내용 속에서는 인권적인 요소로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면, 기술·가정이나 과학 교과와 연계하여 환경권이나 지적 재산권, 또는 노동인권을 연결하여 실습하여 볼 수 있다. 또, 우리 몸의 소중함, 생명권, 건강과 문화를 누릴 권리에 관한 인권에 대하여서는

기술·가정, 체육과에서 다루어 줄 수 있음직하다. 이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유학기제 등에서도 인권 관련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및 사회참여 등의 활동을 통한 인권교육을 실습해 볼 수 있다.

## (2) 교실 내 생활 속 실습

이은진 선생님(에듀콜라 집필진, 2017년 인터뷰)<sup>3)</sup>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문서에 담긴 권리들을 추려서 카드로 만들어 교실에 두고, 아침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에게 자신에게 필요한 권리 카드를 고르게 하고 이와 관련된 스톱토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습을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권리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무엇인지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게다가 이러한 생활 속에서의 인권교육은 실제로 균형 잡힌 인권 인식을 기르는 데 좋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9). 일상생활 속에서의 인권교육 실습은 학교가 인권공동체로서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 속에서 자신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해결하려는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 (3)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영역별 특성화된 실습

지속적으로 강조하게 되는 인권교육의 특징적 요소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실현이다. 이렇듯 인권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배워 익힐 만한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그들의 공동체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권리다. 따라서, 2007 개정 교육과정 이후 본격적으로 교과교육이나 재량활동, 그리고

---

3) [https://www.youtube.com/watch?v=\\_HGgKeh9PoE](https://www.youtube.com/watch?v=_HGgKeh9PoE) 2020년 6월 23일 인출 결과를 시청함.

범교과학습 등의 주제에서 인권교육 강사를 통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 내에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인권적 요소들, 즉 학교폭력의 문제, 성폭력 인지 및 관련 대응, 노동권과 관련한 인권교육, 장애인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문제 등 일선의 교사들이 소화하기에는 벅찬 폭이 넓은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인권 관련 특수영역의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특성화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 예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에 ‘찾아가는 학교 인권특강’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826회에 걸쳐 32,130명이 이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이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직 교사의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전국가적으로 인권교육에 관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확산에도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인권토론공연’을 2019년 인권교육과 관련된 신규사업으로 발표하여 희망 학교에 한하여 특별 지원을 시행하였다. 이 학생인권토론공연은 학교로 찾아가는 극단과 전문배우가 학생 인권과 공연을 결합한 형태로, 교육적인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생 인권교육 프로그램 중의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 (4)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한 실습

전라남·북도 교육청은 ‘사제동행 인권동아리’에 대한 인권교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에듀인 뉴스, 2019.4.23.).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교권을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함께 계획하고 참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인권, 평화 그리고 자치활동 등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중심 목적으로 한다. 특히 교육청 차원에서 인권동아리 활동 전문지원팀을 조성하여, 각각의 동아리마다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해 주며, 운영의 활성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학교 인권동아리 운영을 ‘2019 학생인권 증진 기본계획안’으로 제시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맞추어 민주,

인권, 평화 등의 인권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교 내 행사를 학생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학생동아리에 대한 지원안을 제시하였다.

#### (5) 학생참여위원회 구성을 통한 실습

학교의 운영, 교육청 단위의 정책 운영 등에 학생참여위원회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적인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좋은 예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참여단’이 있다.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100명 이내로 구성이 된 학생 참여단은 교육감의 인권교육 정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고, 서울시의 학생인권조례의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을 자치적으로 주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 옹호관의 조사 및 그 권고사항 등에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밖에도 학생인권 향상과 학생의 참여 확대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참여단 중심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통하여 학생의 학교 인권교육 활성화와 학생 인권정책의 실질적인 정착 및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연계 교육형(교내 + 교외 활동형)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사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인권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폭넓은 주체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규 교과목과 비교과 내용을 구성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 밖 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실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센터 등과 같은 전문교육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학교의 일반 교과 시간에 배웠던 이론적 내용을 학교 밖의 전문기관에서 실습하는 형태의 연계형 인권교육이 있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청소년 관련 인권교육 전문가 단위와 연계를 통해 학교 인권문제에 대한 인적·물적 기반을 지원하는 인권교육 역시 시도해 볼 만할 것이다.

### 3) 위탁 교육형(교외 활동형)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다양한 형태의 전문적인 인권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9). 이에 실제로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인권교육의 영역이나 학교에서 그 내용을 다루기 어려운 경우는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주관하는 외부의 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시끌벅적 인권놀이터’라는 놀이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의 위탁이나 개인적 참여 신청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사들과 활동가들의 단체인 인권교육 ‘들’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권교육캠프, 인권교육 관련 문화 콘텐츠 견학 등 현장실습을 위주로 진행되는 단체가 다수 있다. 이와 같은 학교 외의 인권교육은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각 교육청들이 자체적인 청소년 참여행사의 일환으로 인권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광주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인권골든벨, 청소년 인권평화 캠프(1박 2일), 청소년 모의 인권이사회 등이 있고, 서울시 교육청의 인권교육센터는 노동인권 체험인권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상의 전문적인 양질의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연수원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캠프(1박 2일)를 주관하고 있고,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청소년을 위한 인권캠프(2박3일)를 운영하고 있다.

#### 4) 사이버 인권교육(미디어를 이용한 인권교육)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개학과 함께 한 학기를 보낸 현시점에서 사이버상의 온라인 교육은 이제 익숙한, 교육의 중요한 한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이버 교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습자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열린 학습 콘텐츠의 확산적 보급을 통하여 인권에 대한 가치를 확산하고 인권감수성 증진을 통한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인권교육의 한 영역으로 사이버 인권교육을 제안한다. 이는 벌써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 에서 가능)나 고용노동연수원((중고생용)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과정 제공) 등에서 여러 가지 인권교육의 내용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9월 6일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sup>4)</sup>을 발표하여 사이버인권교육과정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발표하였다. 또,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으로 진행될 인권교육의 자료들을 각각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 교육부, 각 시도교육청, 그리고 국가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Youtube에도 다양한 인권교육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제 교사가 지향하는 수업의 목적과 성취기준에 적절한 다양한 콘텐츠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인권교육이 교사의 입장에서가 아닌 학생의 필요에 의해 학생의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고, 가르치는 일보다 배우는 일에 더 방점을 둘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조성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현재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전의 획일적인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기법인 에듀테크(EduTech, Education + Technology)의 본격적인 도입이 인권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학교현장에서도 본격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오재호, 2020).

---

4) <http://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200000035951> 에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음.



그림 IV-3 광주시 교육청 온라인 민주시민교육 나눔터 메인화면

### 3.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타당성 조사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천 프로그램 구성안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직교사 8명과 인권교육 관련 전문가 2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직교사는 초등학교에서 학생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3명과 유치원 교사 1명, 중학교 학생 인권교육 담당자 3명, 그리고 고등학교 사회교사 1명이 참여하였고, 인권교육 관련 전문가는 현직 교수 2인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습 프로그램 설계의 틀은 타당하게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평균(M) =5.00/6.00, 표준편차(SD)=0.76). 또, 인권교육의 내용구성요소의 전반적인 타당성 역시 (M=5.13, SD=0.99, M=5.50, SD=0.64) 양호하게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모두 평균 5.0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표 IV-8, 참고). 다만, 추가적인 의견으로 인권교육 내용의 구성은 학교급을 막론하고 동일할 수

있지만 그것을 현장에서 구현하는데 있어서 학교급마다 차이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학문의 개념이나 원리는 학교급의 올라가더라도 동일해야 한다는 브르너의 나선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도 각 개별 인권교육의 내용 영역에서는 학교급마다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부연설명이 있었다. 실제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장의 1절에 반영하여 학교급마다 핵심영역과 기본내용을 구별하여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 또한 국내의 인권교육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인권교육의 개념 변화나 최근 인권교육 방향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할 필요성도 있음이 지적되었다.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중에 행복추구권을 추가가 필요함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과 인권친화적 현실 참여의 구분이 모호하여 이를 확실히 구별하거나 아예 동일한 영역으로 일원화하여 제시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다음으로 인권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설계 및 개발 가이드라인이 인권교육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활용가능성의 정도에 대해서도 평균 5.0(SD=0.64)로 양호한 것으로 여겨진다. 각 세부 방법에 대해서 평균 5.13에서 5.50 정도의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추가적인 의견으로는 교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실제 학급에서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교수학습 방법 설계이니만큼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 제시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운영방향에 대한 적절성(M=5.50, SD=0.76) 및 유형별 프로그램의 설계 역시 적절했다고 평가되었다(M=5.50, SD=0.54). 또한 이러한 학교 인권 교육의 운영이 원활하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도출하여 실현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표 IV-7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전문가 타당성 평가 결과

내용	응답자평균 (6점만점기준)	표준편차
1.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생 인권교육 학교 현장 실습 프로그램 설계의 전체적인 틀은 인권교육을 실천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5.00	0.76
2.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생 인권교육의 내용구성요소(인권 존중의 가치/ 태도 형성,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이해,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 인권 친화적 참여)는 인권교육의 내용을 잘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5.13	0.99
3. 인권교육의 내용구성에 대한 각각의 핵심개념을 잘 서술되었고, 전반적으로 학교급의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5.00	0.64
1) 인권존중의 가치/태도형성	5.13	0.84
2)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	5.50	0.76
3)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이해	5.63	0.52
4)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	5.50	0.76
5) 인권 친화적 참여	5.13	0.84
4. 인권교육에 관한 교수학습 방법 설계 및 개발 가이드 라인은 교육 관련자가 쉽게 인권교육을 계획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 개발되었다.	5.50	0.54
1) 문제기반(Task-centered)	5.50	0.54
2) 활성화(Activation)	5.50	0.76
3) 시연(Demonstration)	5.37	0.74
4) 적용(Application)	5.13	0.64
5) 통합(Integration)	5.25	0.71
5. 학생 인권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 운영방향(교육공동체의 역할)은 각 영역마다 적절하게 제시되었다.	5.50	0.76
6. 학생 인권 현장실습 유형별 프로그램 설계는 학교 내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5.50	0.54

## 4.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천 프로그램의 실천 방법

### 1) 인권교육 실천을 위한 공교육 내에서의 안정화

학교현장에서 인권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권교육의 시수 확보 등 공교육 내에서 인권교육 실천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마다 학교 인권담당자를 정하여 학생 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신청을 지원하고, 학교 인권교육 계획 수립과 운영 등 학교 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학생 인권교육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여 실행하였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특히 해당 계획의 내용에는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는 인권교육 시간(횟수)을 학생은 학기당 2시간 이상, 학교 교직원들은 연 2시간 이상, 학생 보호자는 연 1회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다.

### 2) 인권 관련 자료 정리 및 교재 확보

인권교육의 핵심요소로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교육공동체의 역량 강화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시되는 요소는 인권교육의 내용구성이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검증된 자료의 제공과 선택이 필요하다. 이에 인권 교육과 관련된 자료의 정리 그리고 일관성 있는 체계적인 교재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권 관련 자료 정리와 교재의 확보가 획일화된 인권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청 단위 혹은 학교 단위에서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각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실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당 교원 중심의 쉽고 간편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 3) 인권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인권교육의 영역은 매우 넓고, 교사 개인이 역량을 갖추었다고 해도 전체 영역을 적절하게 학생들에게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교사의 역량을 보강해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의 지원을 위해 자체적인 학습동아리나 학교 인권담당자 간의 협의체 구성,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협업이 필요하다. 각각의 교원별, 혹은 학교별 인권교육의 현황 및 실태를 공유함으로써 다른 기관이나 유관 협력 기관의 지원을 통해 인권교육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네트워크 구축은 전체적인 교육공동체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지침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4) 인권교육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천

보편적인 차원의 인권교육을 확산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허종렬, 나달숙, 이대성, 2013). 이를 위해서 먼저, 구정우 외(2011)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평가 도구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 도구를 바탕으로 인권교육의 학습자, 교육자, 프로그램, 기관에 대해 인권지표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친화적인 교과서의 기준에 대해 다섯 가지의 집필 기준을 제시하고 인권교육 교재에 관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허종렬 등, 2013).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인권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권을 학습하는 사람과 인권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지, 인권교육의 진행 과정은 인권 친화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결과적으로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성취목표는 이루어졌는지 에 관해 인권교육의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 — 제 V 장 결론 및 제언

- 1. 학생 인권교육의 제도적 개선
- 2. 학생 인권교육의 법제화
- 3. 학생 인권교육의 전담기구  
설립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를 위해 앞선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인권교육 프로그램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1. 학생 인권교육의 제도적 개선

학생 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먼저 국가 및 각 시도 관할 교육청에서 제도적인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성,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 학생 인권교육 내용의 체계화 등의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

#### 1)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

학생 인권교육을 위해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부분은 인권교육을 위한 전담 조직구성과 관련 인력 확보이다. 사실상 우리나라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시·도 교육청, 그리고 몇몇 민간단체들에 분산된 형태로 각기 다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분산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이들 인권교육 관련 조직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인권교육이 학생들의 인지적 성숙과 확산되는 사회적 활동에 맞추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물론 이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 또한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성은 전반적인 학생 인권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더불어 효율적으로 이를 관리하여 점진적으로 인권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활성화하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2)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실습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학생 인권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학교급에 따른 수준별 차이가 큼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실습 프로그램의 구조는 한계점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각 시·도교육청의 인권교육센터 등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사이버 교육, 집합교육, 혹은 방문교육 등에 대해, 학년별 학교급별 등의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다양한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학생의 생활적 필요에 맞춘 맞춤형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 3) 학생 인권교육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학생 인권교육은 개별 학급 및 학교 수준이나 민간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교육의 내용에 대한 질적인 부분을 보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교육부 등 교육 관련 유관기관은 앞서 제안한 인권교육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적절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이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은 매년 실시되는 우리나라 인권교육에 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가공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인권교육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할 근거를 제시해 주고, 학교 인권교육 관련 지표와 표준화된 공시체계 구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2. 학생 인권교육의 법제화

인권교육에 관한 법제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인권교육의 법제화는 전반적인 국가 수준의 인권교육 내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는 데 체계적인 구성요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더욱이 몇 개의 시·도 교육청은 학생 인권에 관한 조례를 발표하고 이를 실제 학교 현장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여론에 부딪혀 학생의 인권, 학교 인권교육을 뒷전에 미루어 놓은 지역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현실적인 학교 환경을 반영하여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다. 특히, 인권교육지원법안의 구체화 방안 및 현실 적절성을 고려하여 해당 법안이 상정되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법률 전문가, 학교 현장의 인권교육 전문가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인권교육의 실질적인 대상이 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학생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즉, 해당 법령에는 학생 인권교육에 관한 목적, 대상, 필수 인권교육의 이수 시간, 인권 및 인권교육의 내용체계 등을 명확하게 적시하고, 학교급과 학년, 그리고 학생들의 활동 영역을 고려한 인권교육의 영역 등을 자세하게 서술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제화 노력은 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실천을 가능하게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3. 학생 인권교육의 전담기구 설립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인권교육기구를 통하여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하미승 외, 2006; 허종렬 외, 2013, p.191에서 재인용). 예를 들면, 덴마크는 국가인권연구소에 정보교육국을 설립하였고, 프랑스는 국가인권자문위

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여 주관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실 내 교육연구부를 통해, 그리고 호주는 인권·기회 균등위원회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권교육전담기구는 인권교육의 실행과 함께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교육 대상자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인권교육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2015)에 따르면, 다양한 영역에서 각계각층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마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종류와 참여하는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15). 하지만,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전체의 인권교육을 관리하는 조직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학생들은 중복적이거나 불필요한 인권교육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 인권교육의 효과성 자체도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생 인권교육의 발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기구의 구성 및 운영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학생 인권교육 전담기구는 학교 교육의 공동체인 교육청, 학교 관리자 및 교사, 학생의 보호자를 비롯한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인권의 인식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관심과 흥미 유발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학교 인권교육 전문가들의 전용 네트워크망의 핵심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 인권교육의 핵심 요소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권교육 내용의 질적인 발전을 꾀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 UNESCO 한국위원회 (2000).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오름.
- 강대중, 김경애, 김미운, 김차명, 박승원, 부은희 외 (2020). **코로나 19, 한국 교육의 잠을 깨우다**. 서울: 지식공작소.
- 구정우 외 (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구정화 (2010). 인권교육 연구학교 운영에 나타난 ‘인권교육’의 실천적 특성과 한계. **사회과교육**, 49(3), 1-16.
- 구정화. (2018).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체계 분석—사회/도덕 교과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3(1), 1-34.
- 구정화, 설규주, 송현정 (2004).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 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아동 권리위원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8).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19). **국가인권위원회 2018 연간보고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2009).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지침 요약 및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의 열쇠 말 10가지**. 2009년도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실천방안 자료집.
- 금지현, 김진모 (2011). **초등학생의 환경행동과 환경지식, 통제소재, 환경태도**

- 및 환경행동의도의 인과적 관계.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4(1), 27-54.
- 김민아 (2010).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 서울: 끌레마.
- 김수정, 차영화, 최셋별 (2020). 불평등한 미래: 청소년의 '꿈', 지위표식이 되다. **한국사회학**, 54(1), 101-138.
- 김영신 (2010). **친인권적 교실 문화가 청소년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인 (2004). 차이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청소년 인권교육 탐색. **청소년학연구**, 11(1), 245-266.
- 노상우 (2015). 혁신학교의 수업혁신 과정과 과제. **교육종합연구** 13(1), 43-67
- 나심 텔레브 (2019). **스킨 인 더 게임**. 김원호 옮김. 서울: 비즈니스 북스.
- 도현심, 김민정, 신나나, 박보경, 최미경 (2013). 아동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부모존경-자녀존중 부모교육을 기초로. **아동학회지**, 34(3), 151-177.
- 문용린, 광병선, 안경환, 한기철 (2003).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박봉규 (2011). 인권 교육의 방향 탐색: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의식 관계분석. **미국헌법연구**, 22(3), 91-126.
- 설규주 (2005).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과제. **사회과교육**, 44(1), 27-56.
- 손병일 (2011). **부모가 비우면 아이는 채워진다**. 서울: 뜨인돌.
- 신은수 (2002). **놀이와 유아**.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여유진, 김수정, 구인회, 김계연 (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 2007-09.
- 오세희, 김민희, 남형우, 박병권 (2015). **인권교육의 실태와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법무부
- 오연호 (2014).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 오마이북.

- 오재호 (2020). **코로나 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이슈&진단, 1-25
- 유병열 (2012). 학교 인권교육 강화 및 교사의 인권교육 역량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23(2), 51-71.
- 유병열 (2013). 학교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39, 239-264.
- 유성상 (2020). **인권과 학교교육**. 서울: 피와이메이트. 154-156.
- 유해미, 김은설, 황옥경, 김재원 (2011).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권리 실태와 증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연구보고 2011-10).
- 이민영, 김광웅 (2011).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행동통제특성과 내외통제소재 및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청소년학연구**, 18(2), 193-218.
- 이정은 (2013). 한국 인권운동의 토대 형성: 해방 후부터 1970년대 초까지. **역사비평**, 61-91.
- 이종태, 조난심, 나병현, 구정화, 송현정, 이은규 (2005). **한국교육연구소**.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교육센터 들(2018). **인권교육 새로고침**. 서울: 교육공동체 벗.
- 전성수 (2012).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 교육의 기적**. 고양: 위즈덤 하우스.
- 정원오 (2006).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정해숙, 구정화, 박성정, 최윤정 (2011).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조영선 (2020).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서울: 교육공동체 벗.
- 지현아 (2013). **도덕과에서 배려 중심 다문화 인권교육의 적용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18).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및 인권의식 조사 방안 연구**. 연구보고 OR2018-10.

- 한국교육개발원 (2019).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 연구보고 RR2019-28.
- 허종렬, 나달숙, 이대성 (2013) 국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외국 인권교육 제도화 사례와 시사점, **법과인권교육연구**, 6(1), 171-202.
- 홍선미, 이유미 (2018). 어머니의 자녀권리존중 실행이 영아의 정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0(2), 355-369.
- Lister I. (1991).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for education*. In H.Starkey (Ed.).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education* London: Cassell Educ. pp. 245-254.
- Magendzo, A. (2005). Pedagogy of human rights education: a Latin American perspective. *Intercultural Education*, 16(2), 137-143.
- MERRILL, M. D. (2009). 3 First Principles of Instruction.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 Volume III: Building a Common Knowledge Base*.
- Ryan, R. M., & Deci, E. L. (2017). *Self-determination theory: Basic psychological needs in motivation, development, and wellness*. Guilford Publications.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사회과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7]
- 교육부, 제2회 시도교육청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담당자 협의회, 2019. 09.20.
- 교육부 보도자료 (2020.7.9.). 포스트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주요 논의 및 결정사항. <https://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8118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에서 2020년 7월 27일 인출.
- 서울특별시 교육청(2019). 2019 학생인권 증진 기본계획(안). <http://buseo>.

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318&bbsBean.bbsSeq=199&ctgCd=1522 에서 2020년 8월 8일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2.16).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혁신위원회 구성.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1909](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1909) 에서 2020년 6월 27일 인출.

경향신문 (2020.6.11.). 조례를 찾아서(24): 이젠 다 아는 놀이의 중요성, 3년 전만 해도 ‘학부모의 핀잔’ 걱정.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1120190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6112019005) 에서 2020년 9월 1일 인출.

에듀인 뉴스 (2019.4.23.). 전남교육청, 사제동행 인권동아리 지원 대폭 확대.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48> 에서 2020년 9월 8일 인출.

한겨레 (2013.3.22.) 프랑스 자녀 행복 교육법 “좌절을 가르쳐라”.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579323.html> 에서 2020년 7월 21일 인출.

EBS 다큐프라임 (2020). <무엇이 학교를 바꾸는가?> <https://www.ebs.co.kr/tv/show?courseId=BP0PAPB0000000005&stepId=02BP0PAPB0000000005&lectId=20248284> 에서 2020년 6월 21일 인출.

<http://human.gen.go.kr> 에서 2020년 9월 1일 인출.

<http://www.hrecenter-dl.org/10583/> 에서 2020년 9월 1일 인출.

<https://www.mobilizegreen.org/blog/2018/9/30/environmental-equity-vs-environmental-justice-whats-the-difference> 에서 2020년 9월 2일 인출.



○ — 부 록



## 부록

###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전문가 의견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학교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학교에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전문가를 대상으로 내용설계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귀하의 진솔한 평가는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응답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따라 응답의 익명성이 보장되며, 응답 내용은 학술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밝혀드립니다.

**응답기한은 8월 21일(금요일)까지**입니다. 짧은 연구 일정으로 인해 시간을 넉넉하게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사 참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사례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구 기관



■ 연구 수행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정민 부연구위원 jminlee@nypi.re.kr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_\_\_\_ 년 \_\_월\_\_일 서명:

※ 본 연구는 학생 인권교육에 관한 학교현장실습 표준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아 체계적인 학교 인권교육 실습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 인권교육 현장 실습 프로그램 설계 및 강화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학생 인권교육의 설계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선생님의 귀한 의견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 학생 인권교육 실천 프로그램 설계의 틀

<b>1. 인권교육의 내용</b>	인권 존중의 가치/태도 형성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이해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
	인권 친화적 현실참여
<b>2. 교수학습 방법</b>	문제기반(Task-centered)
	활성화(Activation)
	시연(Demonstration)
	적용(Application)
	통합(Integration)
<b>3. 인권교육의 운영체계</b>	인권교육 내용의 체계적 구성
	교사의 역량 함양
	학생의 활동 지향적 학습
	교육공동체의 지원
	외부 전문기와 연대
	학생 보호자의 협력

### ◎ 세부 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2]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학생 인권교육의 내용구성요소(인권 존중의 가치/ 태도 형성,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이해,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 인권 친화적 참여)는 꼭 필요한 인권교육의 내용을 반영하여 구성하였습니다. 각 세부 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2. 인권교육의 내용 구성



###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2-1] 인권교육을 실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인권교육내용의 중 **인권 존중의 가치/태도 형성에 관한 실천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각 세부 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2. 인권교육의 내용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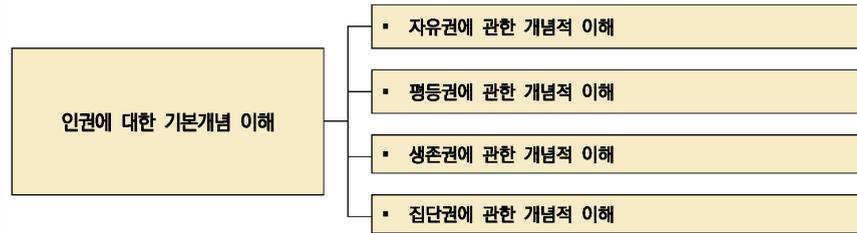
###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2-2] 인권교육을 실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인권교육내용의 중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이해에 관한 실천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각 세부 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2. 인권교육의 내용 구성



###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2-3] 인권교육을 실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인권교육내용의 중 **인권에 관한 법/제도 이해에 관한 실천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각 세부 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2. 인권교육의 내용 구성



###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2-4] 인권교육을 실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인권교육내용의 중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능력에 관한 실천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각 세부 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2. 인권교육의 내용 구성



###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1,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2-5] 인권교육을 실천 프로그램을 설계하기 위한 **인권 친화적 현실 참여에 관한 실천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습니다. 각 세부 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2. 인권교육의 내용 구성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능력

- 자신이 처한 현실 사회 속에서 인권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3] 인권교육에 관한 교수-학습 방법 설계 및 개발 가이드 라인으로 Merrill의 기본 원리인 문제기반 (Task-centered), 활성화(Activation), 시연(Demonstration), 적용(Application), 통합(Integration)을 적용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수학습 방법은 인권교육을 실천하기에 각 카테고리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3-1] '문제기반'의 교수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시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교육 관련자가 쉽게 인권교육을 계획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 개발하였습니다. 각 세부 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1. 문제기반(Task-centered)

인권의 문제를 지식과 더불어 실생활 속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인권교육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 학생의 실생활과 관련된 인권의 문제를 제시한다.
- 제시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인권의 문제나 요소로 세분화하여 제시한다.
-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권의 문제를 시작으로 사회적인 인권의 문제로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면서 제시한다.
- 교사는 학생들이 제시된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지원(scaffolding)을 제시한다.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3-2] '활성화'의 교수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시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교육 관련자가 쉽게 인권교육을 계획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 개발하였습니다. 각 세부 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2. 활성화(Activation)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이나 실제 생활 속의 문제들을 끌어내어 학습한 지식에 적합한 실생활의 문제점들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아이들이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과 새롭게 제시된 지식을 연관 지을 수 있게 돕는다.
- 이미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제시하게 하고, 이를 새로 배울 내용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3-3] '시연'의 교수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시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교육 관련자가 쉽게 인권교육을 계획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 개발하였습니다. 각 세부 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3. 시연(Demonstration)**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지식의 제공과 함께 학습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실례나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권의식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인권에 대한 지식은 일반적인 수준의 추상적인 개념과 함께 구체적인 수준의 실제적인 내용이 존재할 수 있다. 이때 교사는 실제 생활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인권의 내용을 시뮬레이션, 시각화, 모델링 등을 통하여 학습을 촉진한다.
- 인권의 문제를 설명하기에 적절한 매체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제시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통한 인권의 경험을 제공해 준다.
- 인권에 대한 실질적인 개념적 설명이 어려운 경우는 적절한 예시나 반례, 절차나 과정에 대한 시각화 방법을 사용하여 제시한다.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3-4] '적용'의 교수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시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교육 관련자가 쉽게 인권교육을 계획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 개발하였습니다. 각 세부 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4. 적용(Application)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 학습목표 및 학습내용에 부합하는 인권의 문제 또는 과제에 참여하여 배운 내용을 적용 또는 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학생이 자신의 배운 내용을 적용하고 응용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반드시 적절한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제공한다.

####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3-5] '통합'의 교수학습 방법**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시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교육 관련자가 쉽게 인권교육을 계획하는 데 활용될 수 있게 개발하였습니다. 각 세부 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5. 통합(Integration)

인권교육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학습한 내용과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들을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면서 인권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성취목표를 추구하여야 한다.

- 인권에 관해 새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방법을 탐색해 볼 기회를 제시한다.
- 학급 내에서 토론이나 다른 친구들의 학습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자신의 지식과 현실속의 적용 등에 대한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4] 본 연구에서는** 학생 인권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운영체계마다의 역할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체계설정에 관한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학생 인권교육 학교현장 실습 프로그램의 운영방향(안)**

**- 교육공동체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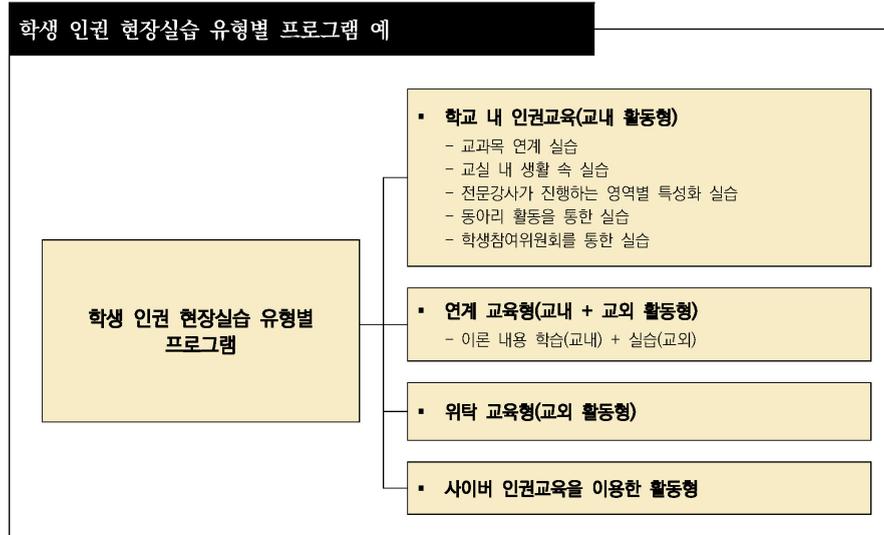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Q5] 학생 인권 현장실습 유형별 프로그램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습 유형이 학교 내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지의 적절성에 대하여 그리고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세부주제 및 항목의 적절성 평가

적절하다	—————→					적절하지 못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준비된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마지막까지 성실히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보고 20-R18

---

##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

인 쇄 2020년 10월 05일

발 행 2020년 10월 12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경성문화사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연구보고 20-R18

## 학생 인권교육을 위한 현장 실천 강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